

# INVENTION & PA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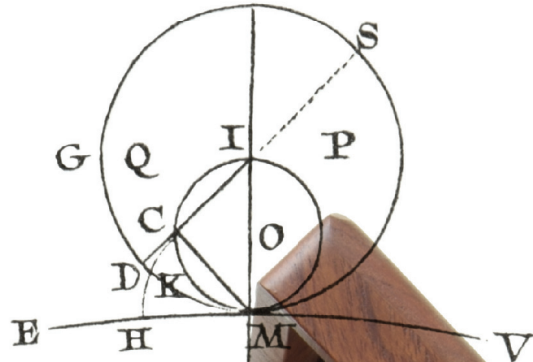
2010 August

#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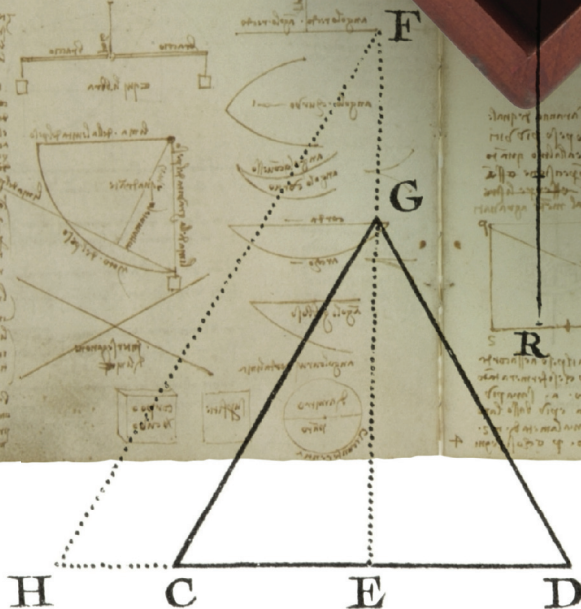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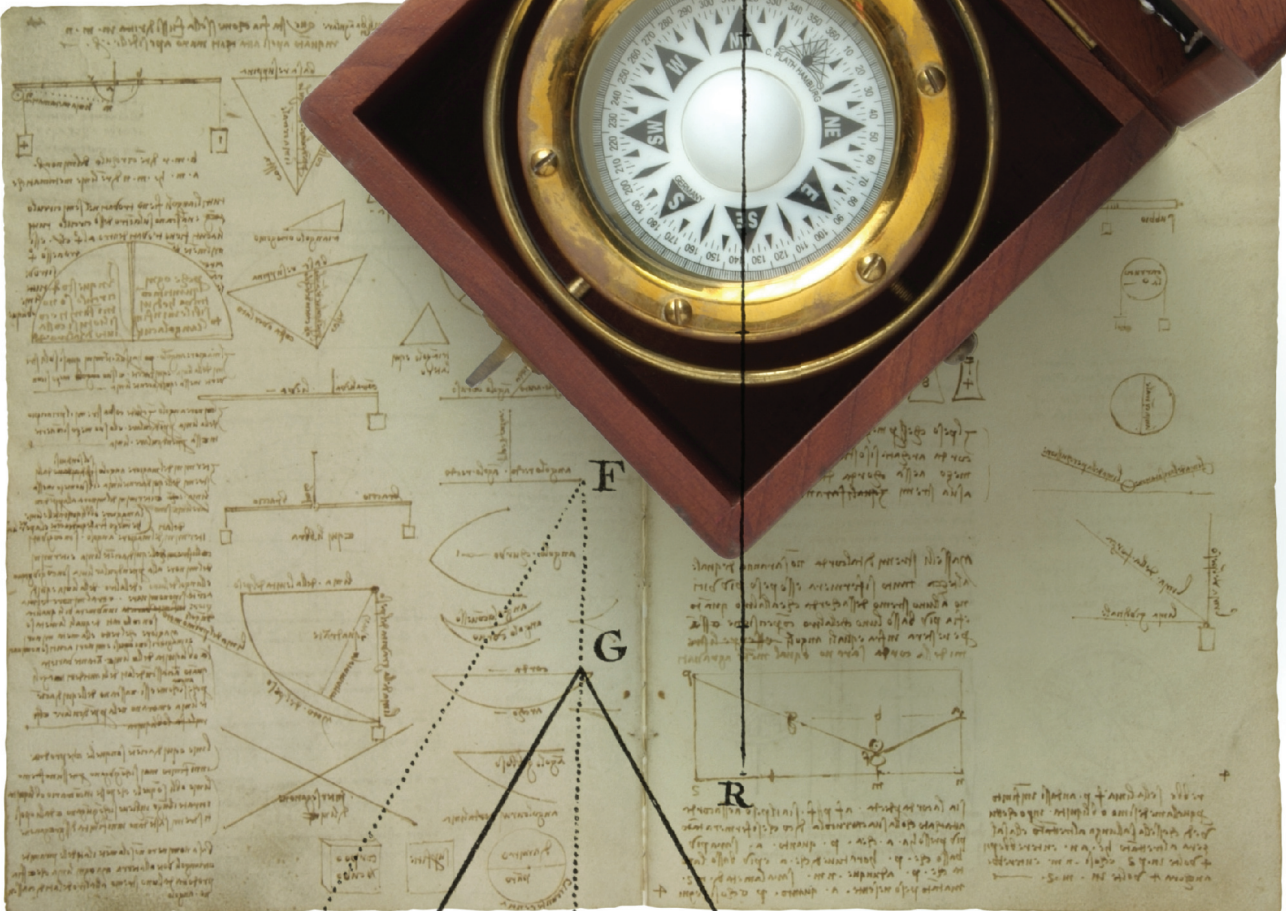
발명  
특허



INVENTION & PATENT



*Fig. 94 N.º 2.*



*fig. 17.* 한국발명진흥회

# 작은 믿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첫 무대라 긴장한 신인가수,  
열심히 노래를 불렀지만  
주인공 대신 나와서인지  
다들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 어디선가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  
“아빠~ 최고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관객들도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작은 믿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든 이야기-  
포스코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http://www.posc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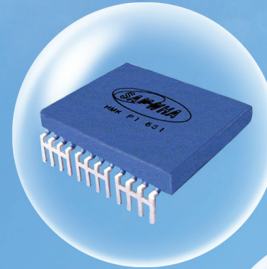




SAMWHA CAPACITOR Co., Ltd.

# Green Technology with SAMWHA

PEA (MLCC for High Power  
Electronic App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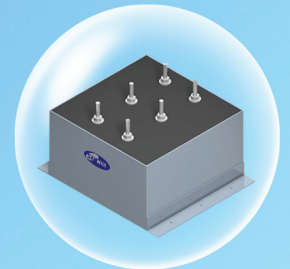
HEV (Hybrid & Electric Vehicle)  
DC link Capaci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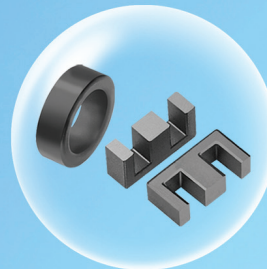
Green Cap (EDL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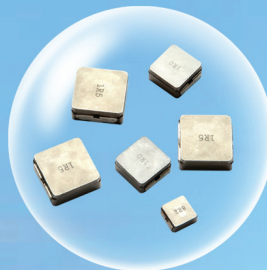
Renewable Energy Capacitors



Ferrite and  
Magnetic Powder Cores



MPC Inductors



High Voltage MLCCs



[www.samwha.com](http://www.samwha.com)

124 buk-ri, Namsa-myeon, Chein-gu, Yongin-si, Gyeonggi-do, Korea

Tel. 82-31-332-5441, Fax. 82-31-332-7661



# “휴 침대” 공장직판

>>> 발명가족 특별우대 <<<

부부용 원목가구 “송례문”



거실용 소파 소가족



## 미국 FDA 등록 20년 역사

SM 수맥 휴 침대

명동성당앞 YWCA 5층 ☎ 777-4888  
공장직판 제2롯데월드 앞 잠실역 ☎ 419-0666

# 엔프라니 레티노에이트 X8



레티놀의 8배\*  
엔프라니 레티노에이트라면,  
주름관리 해 볼만 하다!

보건복지부 국책과제로 신성분 개발 연구  
과학기술부 주관 NET 신기술 인증  
한국/미국 특허 등록, 유럽/일본 특허 출원  
국내외 우수 대학기관 연구소와 기술협력

보건복지부 기능성 화장품 연구, 피부 내 생용 아세트의 콜라겐 생합성을  
Cell 테스트 결과(농도 10-6~7, KR0503331)에 근거하였습니다.

## PRODUCT SELECTION

### DB Cr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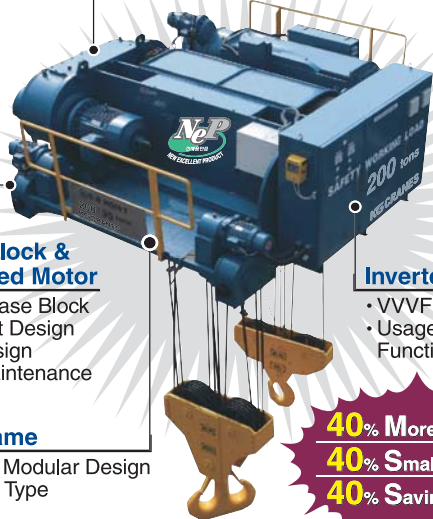
(대통령 표창, NEP 인증 제품)

#### Gear Box & DC MG Brake

- Modular Design
- Variable Speed
- Variety Type of Brakes

#### Reference

- 현대중공업 : 20,000 ton/year
- POSCO : 30,000 ton/year
- 삼성조선 : 50,000 ton/year
- American Shipyard : 5,000 ton/year
- Middle East Steel Mill : 10,000 ton/year



#### Wheel Block & TS Geared Motor

- Single Case Block
- Compact Design
- BBS Design
- Easy Maintenance

#### Inverter Panel

- VVVF Control
- Usage Memory Function

#### Main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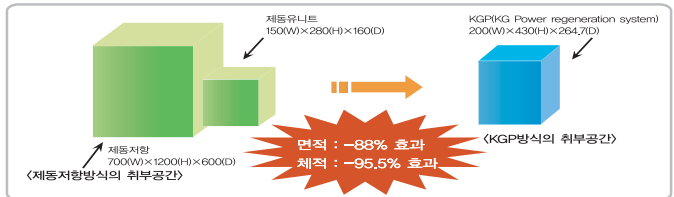
- 10Kinds Modular Design
- Package Type

**40% More Light**  
**40% Smaller**  
**40% Saving Cost**

### KGP (KG Power regeneration system)



#### I KGP 도입에 의한 공간 절약



#### II KGP 적용시 전기요금 절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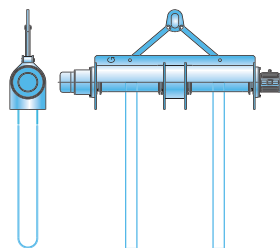
모터 용량 (kW)	고효율 초이스트 KGP적용 후 절감율(%)	절전 용량 (kW)	산업체 적용 전기요금 절감액(원)		
			3,600시간	4,800시간	5,400시간
11	11	1,21	233,917	311,890	350,876
15	11	1,65	318,978	425,304	478,467
22	17	3,74	723,017	964,022	1,084,525
37	22	8,14	1,573,625	2,098,166	2,360,437
55	21	11,55	2,232,846	2,977,128	3,349,269
90	22	19,8	3,827,736	5,103,648	5,741,604
132	22	29,04	5,614,013	7,485,350	8,421,019

• 한국고벨(주)에서 제작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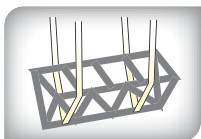
### Turning De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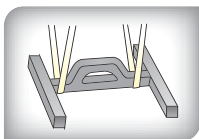
**Turn it Ea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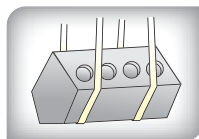
#### Application



Truss



Steel Structure



Engine B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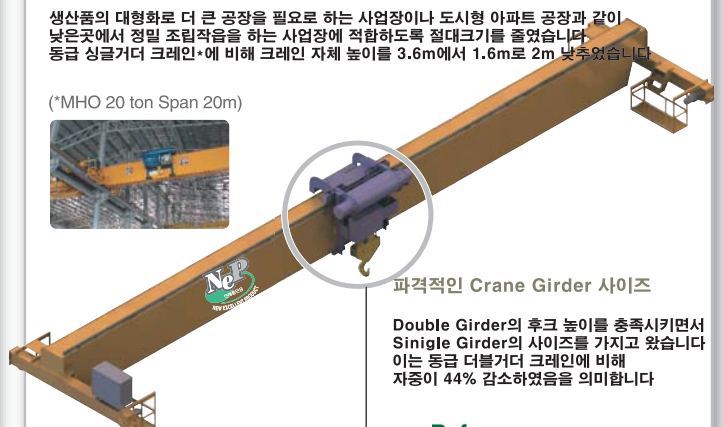
### Low Space Crane

(NEP 인증제품)

#### 건축비를 낮추는 크레인

생산품의 대형화로 더 큰 공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나 도시형 아파트 공장과 같이 낮은 곳에서 정밀 조립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적합하도록 절대크기를 줄였습니다. 동급 상륜거더 크레인·에 비해 크레인 자체 높이를 3.6m에서 1.6m로 2m 낮추었습니다.

(\*MHO 20 ton Span 20m)



파격적인 Crane Girder 사이즈

Double Girder의 후크 높이를 충족시키면서 Single Girder의 사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동급 더블거더 크레인에 비해 자중이 44% 감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Reference

- 두산중공업 : 8,000 ton/year
- POSCO : 6,000 ton/year

VVVF Control (인버터 컨트롤) 진동, 소음, 슬립이 없어 미숙련공도 쉽게 사용하며, 안전하고 정확한 handling을 가능하게 합니다.

혁신적인 Hook 높이  
Mono Girder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이를 만족시키며, Double Girder Crane의 높이 혹은 그 이상을 만족시킵니다.

**KG Crane** is the manufacturer of hoist and crane component since 1968 From Pinion gears to 600ton Goliath cranes. Please visit [www.kgcrane.com](http://www.kgcrane.com)

• Tel : +82-32-583-6671 Fax : +82-32-583-6674 •

# Contents

## IP Report

- 24 특허전략 \_ 기술 전략을 위한 특허 전략
- 30 특허전략 \_ 특허 공공 공략법
- 33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34 특허확대경 \_ 상표권 소진이론 및 병행수입에 관한 국내외 비교법
- 42 세계는 지금 \_ Bilski 판결이후 : 방법특허 출원 및 소송 대응전략 고찰
- 48 발명특허 기네스 \_ 최초의 학생발명전시회 관련우표 및 봉투



82

## IP Column

- 50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_ 2010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성공과 여성발명의 힘
- 57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 58 해피 CEO \_ (주)금성산업 채종술 대표이사
- 61 특허 Q&A \_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62 포커스 \_ 지식재산권으로 히트상품을 만들어보자!
  
- 70 지리적표시단체 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_ 강원도
- 75 발명 365
- 76 건강하게 삽시다 \_ 치과는 왜 안 아플 때 가야 할까요?
- 78 KIPO NEWS \_ 특허청 소식
- 80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81 문화산책
- 82 KIPA NEWS \_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 87 재미있는 퍼즐



84

## 2010 지식재산 Summer School



발행일 2010년 8월호 제35권 제 8호(통권409호) 발행처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_ 우 135-980) 02)3459-2800(대) 발행인/편집인 허진규  
 인쇄인 이평원 인쇄처 휘문인쇄사 (02)2276-1234 인쇄 2010년 7월 30일 발행 2010년 8월 5일 한국발명진흥회 회지 월간 발명특허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와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제23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 제12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 개최안내

학생들의 재치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가득한 발명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창의적인 발명품들의 관람과 함께 재미있는 발명강의, 발명체험교실 등  
흥미롭고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 ▶ 전시기간 : 2010. 8. 13(금) ~ 8. 22(일), 10일간 10:00~17:00
- ▶ 전시장소 :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동 1층 안씨홀, 큐씨홀, 로비 등
- ▶ 주 최 : 특허청, 조선일보사
- ▶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 ▶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립과천과학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여성발명협회
- ▶ 주요 프로그램
  - : 전국 학생들의 발명 수상작 전시(교원발명품 포함), 발명체험교실, 학부모 강좌, 발명 강의, 야외 체험 이벤트 등
- ▶ 세부 프로그램 안내
  - 발명체험교실
    - 일자/장소 : 8월 13일~22일 (17~19일 제외), 1일 3회 운영/국립과천과학관 큐씨홀 (1회 소요시간 : 50~60분, 1회 체험인원 : 30명) ※ 사전 단체예약 가능
    - 내 용 :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원리를 배우는 발명교실
  - 재미있는 생활 속의 발명
    - 일자/장소 : 8월 13일~22일, 14:00~15:00/국립과천과학관 로봇스타디움
    - 내 용 : 발명과 창의력에 대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강의
  - 학부모 강좌
    - 일자/장소 : 8월 13일, 14:00~15:00/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
    - 내 용 : 창의력 증진을 위한 자녀 교육방법 (※ 강의 주제는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담당자
  - 홈페이지 : [www.kipa.org](http://www.kipa.org)      • E-mail : [sol4711@kipa.org](mailto:sol4711@kipa.org)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인간! 창의적인 미래!

# 2010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학생들의 팀워크와 협동심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모험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창의력 올림피아드’

주 최 :  특여정  삼성전자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여성발명협회

일시 : 2010년 8월 6일 (금) ~ 8일 (일)  
장소 : 삼성동 코엑스 Hall A1, A2

## 무료입장



# 2010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KINPEX), 상표·디자인권전(TDEX) 및 서울국제발명전시회(SIIF) 동시 개최 및 출품신청 안내

지식재산권분야를 총 망라하는 국내 최고·최대의 전시회인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및 『상표·디자인권전』과 세계 우수한 발명품이 전시되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발명인 및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최목적

-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발명분위기 확산
- 국내·외 발명인들의 교류 확대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우수 발명품의 판로개척 및 유통활성화 촉진

## 행사개요

- 전시기간 : 2010. 12. 2(목) ~ 12. 5(일), COEX 1층 Hall A
- 개막식 : 2010. 12. 2(목) 11:00, COEX 1층 Hall A 입구
- 시상식
  - 발명특허대전 및 상표·디자인권전 : 2010. 12. 2(목) 11:30, COEX 그랜드컨퍼런스룸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 2010. 12. 4(토) 18:30, COEX 그랜드컨퍼런스룸

## 주최/주관

주최  특허청    주관  한국발명진흥회

## 출품신청

구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상표·디자인권전[우수상표공모전]
신청기간	2010. 8. 12(목) ~ 2010. 9. 13(월)	2010. 8. 12(목) ~ 2010. 10. 8(금)	2010. 8. 12(목) ~ 2010. 9. 30(목)
신청자격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 또는 출원된 발명·고안·디자인품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상표
신청안내	www.kipa.org	www.siif.org	www.trademark-design.org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우편제출	우편제출	온라인 신청
시상내역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WIPO사무총장상 등 141점	대상, 준대상, 금·은·동상 및 특별상 등 200여 점	지식경제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 26점
문의처	발명진흥팀 02)3459-2842	발명진흥팀 02)3459-2796	발명진흥팀 02)3459-2798, 2793

※ 접수처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 상상을 현실로 아이디어를 특허로 2010대학창의발명대회

## 참가자격

국내 대학(교)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구분	참가방법	지도교수	기 타
발명특허 부문	팀(2~3명) 또는 개인	필수	※ Post Doc 참가 가능

## 대회일정

발명특허 부문 (신청기간 : 2010. 8. 24 ~ 9. 28)

졸업작품 · 논문 등 대학 발명활동과 연구성과로서 구현한 발명(자유발명)을 특허출원서 형식의 서면(신청서식)으로 제출

\* 심사후 선정된 본선 진출 40개팀은 발명 시작품 제출(제작비 80만원 한도 지원)

\* 기업체 지원에 의한 성과물은 제외

## 발명연구 부문

대학생이 발명 아이디어를 발명제안서로 제출한 후, 교육과 연구를 거쳐 발명으로 완성하고 발명내용을 특허출원서 형식의 서면과 시제품으로 작성·제출 (2010. 4월~6월, 우수 발명아이디어를 60팀 선정하여 발명연구비를 지급하였으며, 현재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완성하고 시작품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진행 중)

시상식 : 2010. 12. 22(예정)

※ 상가일정은 대외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등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대회 홈페이지(www.inventkorea.or.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hwp, pdf, jpg파일) 등록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의 "전자만원신청" 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hwp, pdf, jpg파일) 등록

### 제출서류

발명연구 부문 : 신청서, 발명제안서, 지도교수 확인서, 재학증명서, 소속 동아리확인서(선택)

발명특허 부문 : 신청서, 발명신고서, 지도교수 확인서, 재학증명서, 소속 동아리확인서(선택)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02-3459-2794, 2793) 및

대회 홈페이지(www.inventkorea.or.kr)

피어라! 상상구름  
펼쳐라! 아이디어

## 시상내역

	구분	발명연구부문	발명특허부문
팀 또는 개인	대상(국무총리)	1팀 (700만원)	
	최우수상 (지경부장관, 교과부장관, 과총회장)	6팀 (각 500만원) 지경부장관 2 / 교과부장관 2 / 과총회장 2	
	우수상(특허청장)	4팀(각 300만원)	
	장려상(학회장)	6팀(각 100만원)	
	소 계	27팀 (총 7,300만원)	
지도교수	지도교수상(특허청장)	7명 (각 200만원)	
단체	최우수발명동아리상(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1개 (300만원)	
	우수발명동아리상(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2개 (각 200만원)	
	발명동아리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	7개 (각 100만원)	
	소 계	10개 (총 1,400만원)	
	합 계	44개 (총 10,100만원)	

## 수상자 특전

기업에 수상자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

우수상 이상 수상작품 중 특허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명은 심사·선정하여 국내출원비 지원

대상수상 발명은 국제발명전 출품 참여를 지원(지도교수 포함)하고, 필요시 해외출원비 일부 지원

## 대회 운영기관

주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특허청,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후원 :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금속재료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대한화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화학공학회

※ 본 대회는 대학발명경진대회와 대해P오선공모전이 합쳐져서 2010년 새롭게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 '10 선진 유럽 혁신 기술 및 산업 시찰단 모집 안내

우리회는 세계 최신기술 개발 동향파악 및 기술개발 의욕고취를 통해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10년 선진 유럽 혁신 기술 및 산업 시찰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시찰기간 : '10. 10. 25(월) ~ 10. 31(일) [5박 7일]

▶ 모집기간 : ~ '10. 10. 7(목) 까지

▶ 참가대상

- 기업체임직원 및 부설연구원, 신상품개발종사자, 기획업무 종사자, 특허관련 업무종사자, 직무발명자, 개인발명가 등
- 기타 참가를 희망하는 자

▶ 세부 프로그램

- Phase I 독일 국제 전시회 참관
- Phase II 독일 및 체코 우수기업 탐방
- Phase III 현지 문화 체험
- Phase IV 성과 확산

▶ 참가비

- 참가비용 : 4,950,000원/1인
  -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일급호텔(2인1실)숙박료, 해외여행자보험, 전용차량, 요금, 현지가이드 비용, 공항이용료, 통역비 등 일체비용 [단, 여권수수비용 제외]
- ※ 참가비용은 10명 이상 출발 시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 참가비납부 - 은행명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308-05-028692  
- 예금주 :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 방법

- 접수처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유주현 계장, 김혜민 사원  
Tel:(02)3459-2795/Fax:(02)3459-2799/E-mail: atom@kipa.org  
Tel:(02)3459-2845/Fax:(02)3459-2799/E-mail: gpalsoo@kipa.org
- 신청서 : 우리회 홈페이지(www.kipa.org) 내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및 전자우편(atom@kipa.org)으로 접수.

# 2010년 주요 국제발명품전시회 일정

참가전시회

전시명	전시기간	출품안내 및 접수	출품자 확정	전시단 파견	비고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	4. 21 ~ 4. 25	3월 2일(마감)	3월말	4월초	종료
말레이시아 국제발명품전시회	5. 14 ~ 5. 16	3월초	4월말	5월 중순	종료
피츠버그 국제발명품전시회	6. 16 ~ 6. 18	4월 중순	5월초	6월 중순	종료
모스크바 국제발명투자전시회	9. 7 ~ 9. 10	7월초	8월말	9월초	모집중
대만 국제발명품전시회	9. 30 ~ 10. 3	7월초	8월말	9월말	모집중
영국 국제발명품전시회	10. 13 ~ 10. 16	7월말	9월말	10월 중순	예정
독일 국제아이디어·발명·신제품전시회	10. 28 ~ 10. 31	8월초	9월말	10월말	예정
벨기에 국제발명품전시회	11. 18 ~ 11. 20	9월초	10월말	11월 중순	예정



# 2010 모스크바 국제발명 및 투자전시회 출품참가자 모집

우리회는 국내발명품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홍보하고자 러시아 최대 발명전시회인 2010 모스크바 국제발명 및 투자전시회의 출품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 전시 개요

- 전시명 : 제10회 모스크바 국제발명·투자전시회  
(X Moscow International Salon of Innovations and Investments)
- 기 간 : '10. 9. 7(화) - 10(금) \* 부스설치 : 9. 6(월) \* 시상식 : 9. 10(금)
- 장 소 : 러시아, 모스크바, Expocentre "Gostiniy Dvor"
- 규 모 : '09년 15개국 1,500여 점 (이란, 폴란드, 보스니아, 루마니아 등)
- 모스크바 국제발명·투자전시회 특징
  - 러시아권 최대의 발명 및 신기술 관련 발명전시회
  - 러시아 중앙 정부 및 모스크바 시가 지원하는 공신력 있는 전시회

## ▶ 출품료

- 직접참가 : 8,300,000원(2mx2m)(항공, 숙박, 부스료, 심사료, 통역비 등 포함)
- 위탁출품 : 5,800,000원(2mx2m)(부스료, 심사료, 통역비 등 포함)

## ▶ 출품자 특전

- 개인 및 중소기업자의 전시회 직접경비(부스료, 통역비)에 한하여 정부보조금 지급을 추천하며 연말에 정부예산범위 내에서 안분 조정하여 출품자에게 지급
- 수상자는 발명의 날 포상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10. 7. 7(수) - 8. 5(목)
- 접수처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유주현 계장, 김혜민 사원  
Tel:(02)3459-2795/Fax:(02)3459-2799/E-mail: atom@kipa.org  
Tel:(02)3459-2845/Fax:(02)3459-2799/E-mail: gpalsoo@kipa.org
- 신청서 : 우리회 홈페이지(www.kipa.org) 내 전시행사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및 전자우편(atom@kipa.org)으로 접수

# 2010 대만 국제발명품 전시회

## 출품참가자 모집

우리회는 국내발명품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홍보하고자 중화권 최대의 발명전시회인 2010 대만 국제발명 및 투자전시회의 출품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 전시 개요

- 전시명 : 제6회 대만국제발명품전시회(6th Taipei International Invention)
- 기 간 : '10. 9. 30(목) ~ 10. 3(일)
- 장 소 : 대만, 타이페이, Taipei World Trade Center
- 규 모 : '09년 16개국 600여 점, 895부스
- 시상제도 : 금상, 은상, 동상 및 특별상 등
  - ※ '09년 한국 : 13사(명) 15건, 금상 8, 은상 5, 동상 2, 특별상 3 수상
- 대만 국제발명품 전시회 특징
  - 참가자 1인 최대 3개 발명품 출품 가능
  - 대만 정부가 지원하는 공신력 있는 발명전시회

### ▶ 출품료

- 직접참가 : 3,900,000원(3mx3m)(항공, 숙박, 부스료, 심사료, 통역비 등 포함)
- 위탁출품 : 3,100,000원(3mx3m)(부스료, 심사료, 통역비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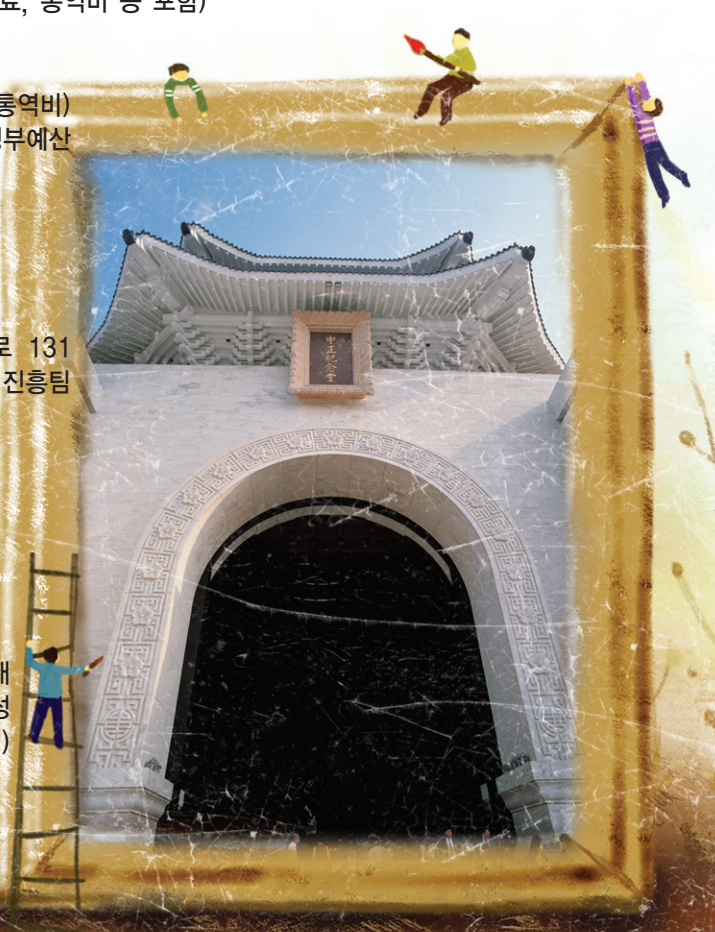
### ▶ 출품자 특전

- 개인 및 중소기업자의 전시회 직접경비(부스료, 통역비)에 한하여 정부보조금 지급을 추천하며 연말에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안분 조정하여 출품자에게 지급
- 수상자는 발명의 날 포상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10. 7. 7(수) - 8. 5(목)
- 접수처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유주현 계장, 김혜민 사원  
Tel:(02)3459-2795  
Fax:(02)3459-2799  
E-mail: atom@kipa.org  
Tel:(02)3459-2845  
Fax:(02)3459-2799  
E-mail: gpalsoo@kipa.org

- 신청서 : 우리회 홈페이지(www.kipa.org) 내 전시행사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및 전자우편(atom@kipa.org)으로 접수



## < 최적의 교육환경 >

- ▶ 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 ▶ 규모 / 연면적 48,638.66㎡, 층수 지하 8층, 지상 20층
- ▶ 수용인원 / 1일 동시 교육인원 300명
- ▶ 교육시설 / 교육장 2실, 분임토론실, 국제회의실, 휴게실 등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지식재산캠퍼스 제2교육장



국제회의실



분임토론실



휴게실

## < 2010 하반기 프로그램 >

### [ 지재권 일반교육 ]

- 1 08.24 - 08.27 지식재산권기초 3차
- 2 09.08 - 09.10 특허IP5 소송절차 비교
- 3 09.13 - 09.14 트리즈 실무인력 양성
- 4 10.07 - 10.08 특허전략과 연구성과 관리
- 5 10.13 - 10.15 디자인 및 상표전략
- 6 10.20 - 10.22 특허명세서작성 SKILL UP
- 7 10.27 - 10.29 IP 정보검색 SKILL UP
- 8 11.03 - 11.05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 9 11.10 - 11.12 PM작성 실무
- 10 11.24 - 11.26 지식재산회계

### [지재권 일반교육]

- 11 07.09 - 07.09 특허손해배상액 산정실무
- 12 11.19 - 11.19 화학생명 분야 비특허문헌 조사
- 13 11.30 - 11.30 특허소송서류작성실무
- 14 12.06 - 12.06 기업 M&A시 IP협상전략

### [지재권 핵심교육]

- 15 07.06 - 07.06 미국명세서 대비 유럽명세서 작성 실무
- 16 08.19 - 08.19 특허대리인 선정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 17 09.03 - 09.03 중국/대만 진출 국내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
- 18 09.30 - 09.30 직무발명보상액 산정기준
- 19 10.25 - 10.25 영업비밀 관리 실무 및 노하우
- 20 11.15 - 11.15 ITC를 통한 IP 분쟁실무
- 21 11.22 - 11.22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IP전략 수립
- 22 12.10 - 12.10 해외글로벌 기업의 특허경영 전략

## < 수강신청 방법 및 문의처 >

### ▶ 수강신청방법

- www.ipcampus.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 교육신청서 송부 (fax : 02-3459-2789)

### ▶ 문의처

- e-mail : yongil@kipa.org, bubbledoll@kipa.org
- 02-3459-2767, 2781



## 발명특허 기네스 모집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발명특허'는 새로운 연속 기획특집으로 '발명특허 기네스'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역사 뒷장으로 사라지거나 소멸되어가는 발명특허 관련 자료 제1호를 찾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발명특허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마련한 이 연속기획특집에 독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제1호 또는 최대 등 '기네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그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개된 자료보다 앞선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언제든지 바로잡아 소개하겠습니다. 기네스로 소개되는 순간 소장하신 자료는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인의 기록은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전해질 것입니다.

소개 대상은 편의상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법(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 제197호 한국의장령, 제198호 한국상표령 등) 시행 이후 자료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락처 : '월간 발명특허' 편집실  
02)3459-2797

# 제3차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공고

2010년도 국제출원비용지원 사업은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협약체결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의 특허기술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비용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입니다.

## ▶ 사업목적

우수특허기술의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

## ▶ 지원대상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제외)

- PCT 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 건  
※PCT 국제출원 : PCT만 출원한 경우/PCT를 통해서 개별국 진입한 경우
-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 건  
※개별국 직접출원 : PCT 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

## ▶ 지원내용

국제출원비용 : 1인당, 5건, 특허, 실용신안 건당 700(디자인 200)만 원 이내

- 개별국 1국을 1건으로 처리함
- 수혜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의 소요 비용 지원(단, 향후 정부예산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5년 동안의 비용 지원을 못할 수 있음)

## ▶ 지원절차

- 사업 신청 및 접수
- 선정심사회의(기술성 및 활용성 평가)  
⇒ 신청하신 모든 서류는 선정심사위원회(신청서류로 검토)에서 결정, 신청하신 모든 서류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혜자 선정
- 지원

##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온라인으로는 신청서만 작성하고,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접수
- 구비서류가 진흥회에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하기([www.kipa.org](http://www.kipa.org)) → 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국제출원비용보조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접수기간(3차) : '2010. 07. 01 ~ '2010. 09. 10(수혜자선정 통보는 11월말 예정)

## ▶ 신청 시 유의사항

- ※ 제1차 및 제2차의 신청서식이 약간 변경되었사오니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PCT국제출원의 경우 : PCT만 출원을 한 경우, PCT를 통해서 개별국을 진입한 경우를 의미함
- ※ PCT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 PCT 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를 의미함
- ※ 개별국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 다른 정부기관에서 국제출원비용을 지원받았을 시 선정불가하며, 추후 적발 시 환수조치함
  - 1·2차 신청자가 선정에서 탈락 후 3차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재신청해야 함 (예 : 2010년 1월~3월 1차 신청후 탈락통보를 받은자가, 2010년 7월~9월 3차에 재신청 시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출)
  - ※ 한국무역협회추천서 또는 온라인 회원증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증빙자료 첨부
  - 비용발생금액과 출원번호의 증빙서류에는 형광펜으로 반드시 해당금액 및 번호에 표기요망

## ▶ 문의처

-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국제출원비용서류 제출
-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02-3459-2940, 2933, 2932
-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실 : 02-6000-5277, 5253



# 2010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안내 (3차)

## ▶ 목적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우수발명품에 대한 정부·공공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 ▶ 신청 자격

□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상기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본사업신청 동의서 첨부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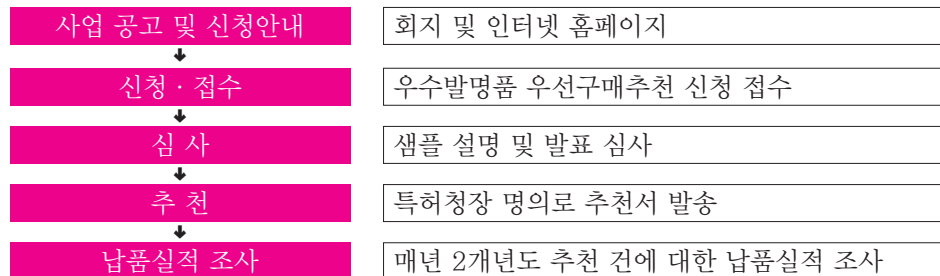
※ 1999. 7. 1 ~ 2006. 9. 30 사이에 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된 기술은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권리에 한함

□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 1사 1제품에 한함

## ▶ 우선구매추천체계

□ 추천 절차



□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 심사기준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술의 고도성, 파급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 구매효과성 : 대체우위성, 가격경쟁력, 시장성
-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 신청권리대비 제품의 연관성 등

□ 선정 시 혜택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일부 면제
- 우수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 신청서 배포 및 접수처

□ 신청접수기간 : 2010년 7월 ~ 8월 31일 도착분에 한함 (3차 마감)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우선구매추천사업 담당자)
- e-mail : hjyon@kipa.org

□ 신청 시 구비서류

- 우리회 홈페이지 www.kipa.org 내 사업공고에서 모집요강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특허등록원부 등본, 공고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제품 카탈로그, 공장등록증 또는 OEM 생산계약서 각 6부
- 심사가점대상 및 인증현황에 대한 증명서는 반드시 첨부할 것

##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전화 : 02-3459-2798)

제8회 여성발명경진대회 /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

# 여성의 성공 발명 사례와 참신한 발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실용적인 생활발명품의 산실이 되어 온 「여성발명경진대회」와 발명으로 성공한 여성들의 모범을 제시할 「2010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에 발명의 꿈을 꾸는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I. 제8회 여성발명경진대회

- 참가부문 : 일반부문 / 학생부문 / 과학부문 / 장애인부문
  - 부문별 세부 참가 자격은 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 공지사항 참조
- 출품대상
  - 신청일 현재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발명 및 고안, 디자인 등(출원 중인 경우는 가능)
  - 1인 1건에 한하고, 발명 대회 등에서 수상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외
- 시상내역
  - 대 통 령 상 : 1명(4백만원)
  - 국무총리상 : 1명(3백만원)
  - 금상 4명(각2백만원), 은상 6명(각1백만원), 동상 20명(상패, 부상), 장려상 20명(상장, 부상)
  - 과 학 부 문 : 최우수상 1명(2백만원), 우수상 1명(1백만원)
  - 장애인부문 : 최우수상 1명(2백만원), 우수상 1명(1백만원)
  - ※ 시상인원은 참가 건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도 있음.

## II. 2010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

- 지난 1995년부터 개최해 온 제16회 우수사례발표회가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참가부문 : 일반부/학생부(여대생 및 대학원생)
- 신청대상
  - 발명(지식재산권)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여성발명인 또는 기업인
  - 우수한 발명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제품을 개발한 여성
  - 우수한 발명(지식재산권)으로 사업화를 진행 중인 여성
  - 발명진흥을 위한 공적 및 기여도가 있는 여성
- 시상내역
  - 여성발명기업인상 : 3명(각 상패, 부상),
  - 여 성 발 명 인 상 : 1명(상패, 부상),
  - 여대생발명인상 : 1명(상패, 부상)

## III. 공모일정 및 신청 방법

- 공모일정
  - 접 수 기 간 : 2010년 9월 5일(일)까지
  - 수상자 발표 : 2010년 10월 중순 예정
  - 시 상 식 : 2010년 10월 20일(수), 서울팔레스호텔(예정)
-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류 : 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 공지사항에서 소정양식을 내려 받아 제출
  - 접수방법 : 이메일(kwia01@inventor.or.kr),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여성발명협회
  - 문 의 처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전화 02-538-2710, 팩스 02-538-2714)

주 최 |  특허청

주 관 |  한국여성발명협회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특허정보원 등 (예정)

# 디자인 정보

## 조사서비스



www.  
designmap.or.kr

## 디자인정보 조사서비스

### 1. 디자인 조사서비스

#### ■ 디자인 선행자료 조사서비스

- 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DB (한국·일본·미국·WIPO·OHIM (유럽)·GE·과거해외공보·실용신안·카탈로그)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디자인 등록 가능성의 예측 및 경쟁사 디자인 동향 파악 등에 활용

#### ■ 우선심사용 조사서비스

- 빠른 출원을 원할 경우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후 디자인전문기관에 우선심사용 조사서비스를 의뢰하고 전문기관이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누구나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 디자인 무효·침해 조사서비스

디자인 분쟁에 관한 자료분석을 통해 권리 범위를 확인하고 무효 소송 및 침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

### 3. 디자인정보 분석서비스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로서 특정 디자인분야 연구개발테마와 관련된 출원 디자인의 배경과 관련 기술 등을 찾아 제공

### 4. 디자인 맵 서비스

국내외 출원된 디자인 이미지 검색, 트렌드 분석, 포지셔닝 맵, 이미지 맵, 유사디자인분석, 분쟁디자인분석 등 사용자가 자유롭게 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http://www.designmap.or.kr/>)

상담  
신청  
안내

[디자인 조사서비스 / 디자인 무효·침해 조사서비스]

☎ 신청 및 상담 : 고은혜 선임 02-6915-6770

[디자인정보 분석 서비스 / 디자인 맵 서비스]

☎ 신청 및 상담 : 곽상수 선임 02-6915-6752

#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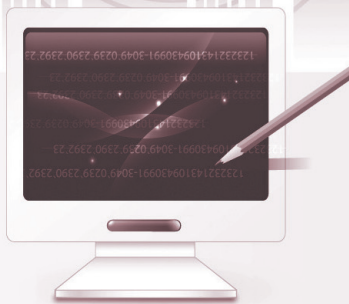
## 특허청

### 규제개혁 추진

### 과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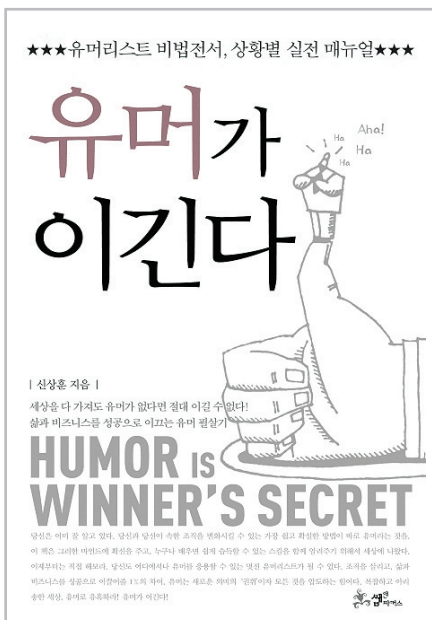


번호	과제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기대효과	완료 예정시기
<b>[중점과제]</b>					
1-1	첨단 부품소재 R&D 중소기업의 IP전략 지원사업 신청대상 확대	녹색기술분야 IP-R&D 연계전략 지원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및 핵심·원천 특허로 무장한 세계적 수준의 부품소재 강소기업 육성	첨단부품·소재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녹색기술분야 IP-R&D 연계전략 지원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및 핵심·원천 특허로 무장한 세계적 수준의 부품소재 강소기업 육성	'10. 11.
1-2	녹색기술 국제특허 출원비용 지원요건 완화	국제특허 출원인의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출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되어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	우수특허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국제특허 출원인의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출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되어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	'10. 6. 30 (완료)
1-3	녹색특허 보유기업 시작품 제작지원 비중 확대	권리양도, 실시권 허여 등의 경우 고가의 금형제작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3D 제작을 지원하여 수혜 중소기업 등의 비용부담 완화	우수특허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권리양도, 실시권 허여 등의 경우 고가의 금형제작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3D 제작을 지원하여 수혜 중소기업 등의 비용부담 완화	'10. 6. 30 (완료)
1-4	지역 중소기업 특허 정보종합 컨설팅 지원 확대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수혜기업의 지식재산역량 강화 및 수익창출에 기여	특허정보종합 컨설팅 운영지침 개정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수혜기업의 지식재산역량 강화 및 수익창출에 기여	'10. 6. 24 (완료)
1-5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에서 중소 기업으로 전환	브랜드 개발 및 권리와 확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부가치를 증진하여 기업가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사업 운영지침 개정	브랜드 개발 및 권리와 확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부가치를 증진하여 기업가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10. 6. 24 (완료)
1-6	지역 디자인 스타기업 신규육성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 개발 및 권리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	지역디자인 가치제고사업 운영지침 개정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 개발 및 권리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	'10. 6. 24 (완료)
2-1	국제특허분쟁 대응 지원대상 선정절차 개선	운영절차 합리화를 통한 신속한 지원으로 대상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행정비용 절감	국제특허분쟁 대응지원 운영지침 제정	운영절차 합리화를 통한 신속한 지원으로 대상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행정비용 절감	'10. 7.
2-2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중소기업 참여회 확대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기업내 자체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운영 및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지식재산 직무교육 사업 운영지침 개정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기업내 자체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운영 및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10. 6. 30 (완료)
2-3	중소기업의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요건 완화	보상한도 확대, 대상지역 확장 등 보험상품 다각화를 통한 기업의 가입부담 경감 및 분쟁리스크 최소화	지재권 소송보험 운영지침 제정	보상한도 확대, 대상지역 확장 등 보험상품 다각화를 통한 기업의 가입부담 경감 및 분쟁리스크 최소화	'10. 7.
2-4	민간 지식재산전략 전문가 파견사업 신청요건 완화	소기업의 현금부담은 10%로 완화하고, 중기업·중견기업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 기업규모별 매칭조건의 형평성 확보 및 소기업 부담 완화	지역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 운영지침 개정	소기업의 현금부담은 10%로 완화하고, 중기업·중견기업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 기업규모별 매칭조건의 형평성 확보 및 소기업 부담 완화	'10. 6. 24 (완료)
2-5	공익변리사의 특허 심판대리 허용	공익변리사의 기능을 종래 상담위주에서 심판대리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약자 등의 지재권 분쟁지원을 강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센터 운영세칙 개정	공익변리사의 기능을 종래 상담위주에서 심판대리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약자 등의 지재권 분쟁지원을 강화	'10. 11.
<b>[일반과제]</b>					
1	디자인심사출원서류 복사디자인출원 허용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인 가능한 것을 다수의 디자인을 한 개의 출원서로 출원 가능하게 허용	디자인보호법 개정	다수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류 각각 출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한 개의 출원서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가 증대되고 처리하는 행정비용 절감	'10. 8.
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대상 확대	디자인무심사등록 출원시 20개이내에서 복수출원이 가능한 것을 100개 이내로 복수출원 가능 범위를 확대	디자인보호법 개정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시 복수디자인의 경우 20개에서 100개까지 출원이 가능하게 되어 출원인의 편의가 증대되고 처리하는 행정비용 절감	'10. 8.
3	특허권 긴급 수용·실시 요건 완화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외의자가 타인의 특허권을 수용·실시 할 경우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중 사후보완을 전제로 일부를 생략가능 할 수 있도록 개선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신종플루 사태와 같이 공익상 극도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정부외의 자가 타인의 특허권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수용·실시 할 수 있도록 함	'10. 7.
4	심사관 직권보정 제도 도입	성표등록요건과 무관한 단순한 기재오류 등과 같이 명백한 오기로 판단되는 사항은 보정서 발송과 같은 별도절차없이 심사관 직권 보정 허용	상표법 시행령 개정	명백한 단순 오기 같은 경우 심사관직권 보정이 가능하게 되어 출원인의 보정요구서 제출이 생략되는 편의 제고	'10. 7.
5	국유특허권 무상실시 기간 확대	국유특허권의 무상실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국유특허권 무상실시요령 개정	1년간 사용하는 무상실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국유특허 사용자는 장기간 초기 비용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하여 기업·개인 사용자의 비용절감에 기여	'10. 2. 18 (완료)
6	국제출원 수수료 반환제도 도입	PCT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의 특허출원에 대한 선 심사결과가 있어 이를 해당 PCT 국제출원에 이용할 경우, 출원인에게 국제출원 수수료 일부 반환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후무취급규정 개정	PCT 국제출원 심사 시 선행 심사결과를 이용한 것에 대한 것은 그 사용 부분만 클 절감되는 수수료를 출원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출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10. 4. 19 (완료)



번호	과제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기대효과	완료 예정시기
<b>[일반과제]</b>					
7	상표 우선심사 신청 요건 완화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공동상표를 단체표장으로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상표법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의 공동사용을 위한 단체표장 출원임을 제시할 경우, 상표우선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불필요한 서류 작성 부담 경감	'10. 7.
8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각종 지원정책에 따른 결과물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진 경우 우선(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대상을 확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녹색기술도 우선(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어 해당 기업 및 개인이 신속한 권리화를 통해 시장선점 효과	'10. 4. 29 (완료)
9	변리사 등록 및 실무 수습업무 민간위임	변리사 등록·취소·변경 등 등록사항과 신규 변리사 수습교육 및 수습관리·점검 등 업무를 민간(변리사회)으로 이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행안부소관)	변리사관련 단순집행업무의 변리사회 이관으로 특허청은 정책업무 집중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변리사회는 공공업무 수행으로 법정단체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객인 변리사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가능	'10. 12.
10	지재권담보 질권설정 방법 개선	지재권을 담보로 근질권을 설정할 경우 재권최고액을 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개정	근질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채권최고액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행정신청비용을 감소하여 국민부담을 경감	'10. 7.
11	공유특허권 등록절차 개선	지재권이 공유인 경우 그 지분 및 특약사항을 등록원부에 확인등록·변경 및 말소할 수 있도록 개선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개정	특허권 및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공유자간 지분 및 특약사항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 등록원부의 공식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불편 해소 및 부담 완화	'10. 7.
12	지재권 출원료 감면 대상 확대	PCT 국제출원 중 실용실안출원에 대하여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자치단체 출원에 대한 출원료 감면 규정 신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실용실안에 대해서도 특허와 같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어 국민의 부담을 경감	'10. 7.
13	디자인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요건 완화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디자인보호법 개정	출원시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일정 기간 내에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출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	'10. 8.
14	디자인 출원서 반려 처분 대상 완화	디자인 출원서 일부 항목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만 보완하도록 개선	디자인보호법 개정	출원보완에 따라 모든 서류를 재출원하지 않고 해당 출원서만을 정정함으로써 국민부담 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	'10. 8.
15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인 것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 확대	디자인보호법 개정	국제수준으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디자인 출원을 장려하고 국경 향상에 기여	'10. 8.
16	관련 디자인 제도 도입	현행 유사디자인제도를 관련디자인제도로 변경하여 기본디자인의 소멸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존속기간 인정	디자인보호법 개정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디자인의 독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인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담 완화 기대	'10. 8.
17	복수디자인제도 개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일부 디자인에 대해 비밀디자인 청구, 출원공개신청, 디자인 등록 결정이 가능하게 개선	디자인보호법 개정	복수디자인제도에서 일부 디자인을 인정하여 권리화 해 줌으로써 출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권리화 및 사업화가 가능	'10. 8.
18	디자인등록출원 보정 절차 간소화	디자인출원서 단순기재 오류등은 보정요구서 발송 및 보정서 제출이 없이 심사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	디자인보호법 개정	명백한 단순 오기재에 따른 보정절차를 생략하여 출원인의 편의제공, 디자인등록공보의 정확성 제고	'10. 8.
19	디자인출원 재심사 대상 확대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보정할 수 있는 항목을 디자인도면이외의 출원서 기재사항까지도 허용	디자인보호법 개정	심판사항을 재심사로 갈음함으로써 심판에 따른 비용 및 시간절감	'10. 8.
20	최초출원인확인서 제 증명 신청·발급 제도 개선	오프라인으로만 발급하던 최초출원인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전자민원 시스템 (특허넷) 개선	최초출원인확인서 병합 신청, 최초출원인확인서 온라인 발급을 통하여 출원인의 업무 편의를 증진하고, 출원인의 비용 절감에 기여	'10. 7.
21	특허심판 관련 서류 신청·발급 절차 개선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했던 구술심리조서, 심판 속기록/녹취테이프 온라인발급·신청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전자민원 시스템 (특허넷) 개선	심판서류철에 제외되어 있던 구술심리조서를 추가하고, 심판 속기록/녹취테이프에 대한 발급 절차를 신설하여 출원인의 업무 편의성 증진	'10. 8.
22	특허심판청구서 청구 취지 일부취하에 관한 처리절차 개선	구술심리에서 신청한 청구취지 일부취하를 별도의 서면 제출없이 가능하도록 개선	인터넷 전자민원 시스템 (특허넷) 개선	청구인의 청구취지 취하서 작성 부담을 해소 및 신속한 심판처리 도모	'10. 8.
23	부가기간 지정신청시 송달일 증명서류 제출 생략	특허법상 부가기간 지정신청을 할 경우 송달일자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개정	국민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 경감 및 심판업무 효율성 제고	'10. 7.

# 유머가 이긴다



저자 \_ 신상훈  
출판사 \_ 쌤앤파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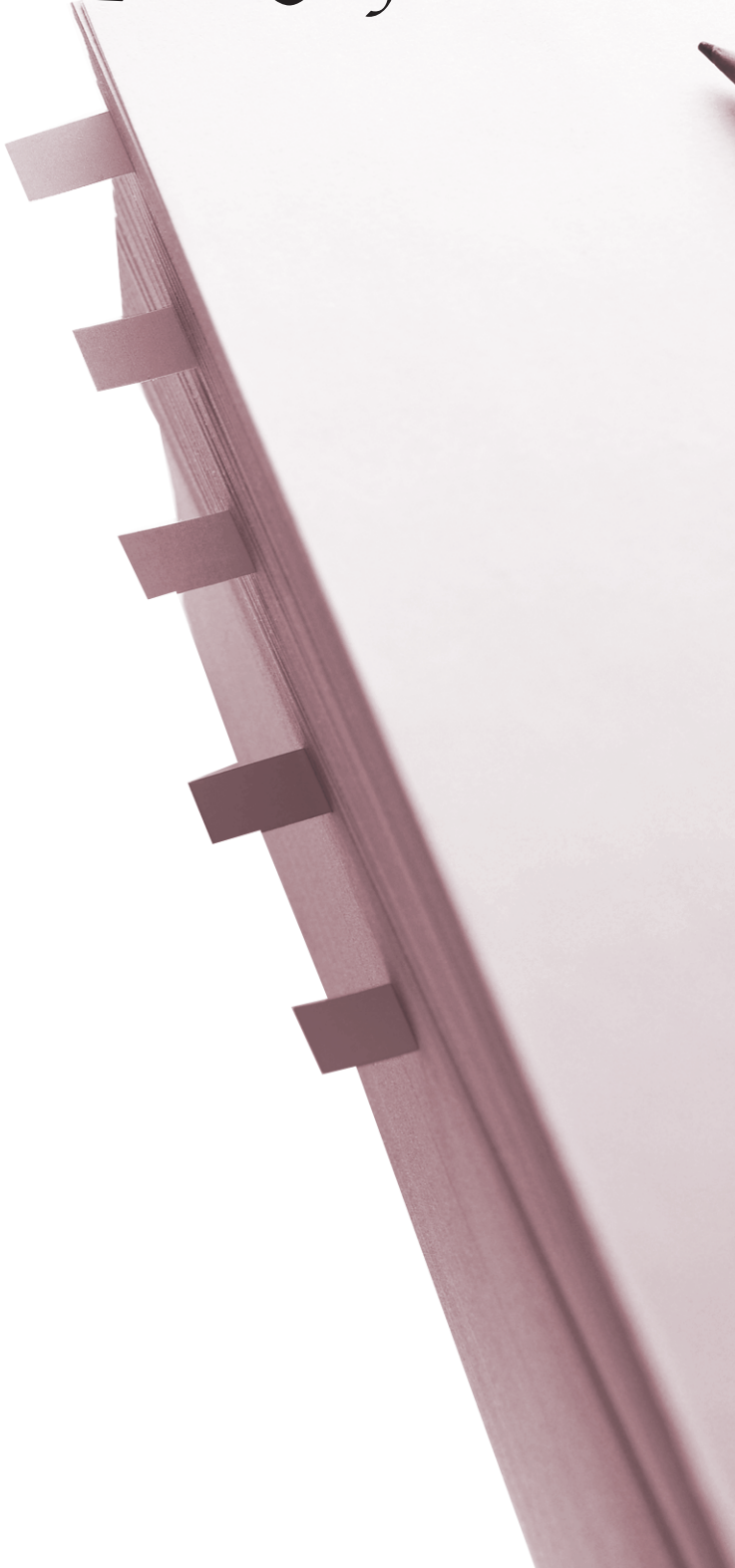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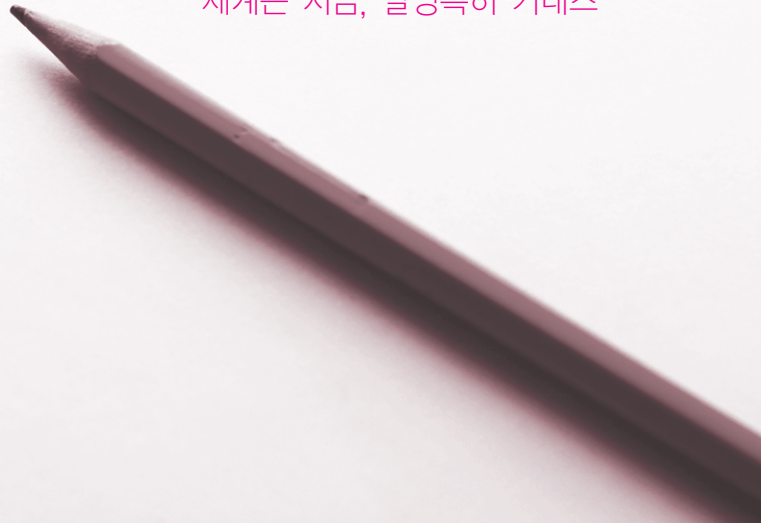
## 책소개

### 삶과 비즈니스를 유쾌하게 변화시키는 힘, 유머!

삶과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유머의 힘 『유머가 이긴다』. 삼성경제연구소 SERI CEO의 명강의로 꼽히는 '개그맨 뺨치는 개그 교수' 신상훈의 유머 강의를 책으로 만날 수 있다. 자신의 20년 유머 노하우를 바탕으로, 촌철살인의 유머를 통해 감탄과 감동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유머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스킬이라고 말하며, 웃음이 터지는 몇 가지 원칙만 알면 누구나 멋진 유머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품위 있으면서도 가슴을 파고드는 공감으로 누구라도 웃게 만드는 통찰적 유머를 상황별로 제시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머의 힘을 전해준다.

# R eport

특허전략,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특허확대경  
세계는 지금, 발명특허 기네스





# 기술 전략을 위한 특허 전략

‘스마트’ ‘SNS’ ‘클라우드’ ‘승자 독식의 시대’ ‘녹색기술’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다양한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러한 용어는 기술의 진보와 같이 하나, 둘씩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슬며시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몇 년 전에 익숙했던 용어는 없다.

굳이 이런 용어를 말하지 않아도 기술의 발전 속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고, 광범위한 범위의 기술들이 Conversion화 되면서 기업 환경에 있어 기술의 선택과 집중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분야일수록 기술 속도가 빠르며 Conversion화 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휴대 단말 분야를 볼 때, 과거 10년 전의 휴대 단말은 단지 통화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전화기를 휴대하면서 연락이 되고 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생활을 혁명과도 같이 변화시켰다. 5년 전쯤의 휴대단말은 거기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영상통화가 가능하며 각종 기능이 추가되어 Embedded된 기능들이 휴대단말기의 소유자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단순한 통화의 성능으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기능 혹은 개별 H/W의 Spec에 따라 단말기를 선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카메라에 대해서는 어떤 화소의 카메라를 장착할 것인지? MP3 기능을 탑재하여 별도의 MP3 Player를 소지할 필요 없게 할 것인지? 음성인식 기술을 단말에 적용하여 단말

을 Control하는 interface로서 활용할 것인지? 보안을 위해 지문 인식 기능을 채용할 것인지 등 다수의 기능들을 어떠한 성능으로 제품에 적용해야 할 지를 고민했다.

이러한 기능을 단말기에 장착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자사의 단말기를 소유하게끔 하는 needs를 창출하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이용함으로써 휴대성과 편리성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2008년 ~2009년을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휴대 단말기에 대해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Apple의 iPhone이 그 변혁의 출발점이다.

2000년대 초 Apple은 iPod이라는 MP3 Player와 iTunes이라는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연계시켜 H/W와 Contents를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System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Apple은 혁신적인 iPhone을 시장에 내놓게 된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H/W의 성능과 앱스토어를 활용한 수십만 가지의 Application을 활용할 수 있는 Platform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시도는 통신/ 휴대단말 산업에 Ecosystem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단순히 휴대 단말기를 잘 만들어 팔기만 하던 회사와 각종 Application을 만들어서 제공하던 회사와 단말기에 적용되는 기능적인 H/W 부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회사 모두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 주게 되었다.

과거 우리 기업들은 원천적 기술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결과물에 대한 Risk를 고려하여 모방 개발 위주의 Fast Follow 전략을 구사하여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현재와 같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많이 배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우리 기업들의 규모가 너무 크고 각 기술군에서 선도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상 Fast Follow 전략으로는 현재의 위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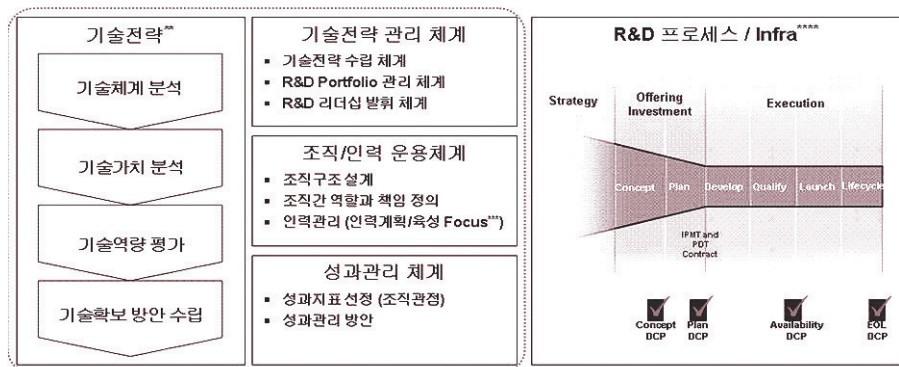
사수하거나 더욱 향상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크나큰 고민거리인 것이다.

이러한 사업환경 변화를 회사의 규모와 업종 분야에 따라 얼마나 빠르고 주도적이면서 정확히 파악하는 나가 중요하게 되었고, 내재화해야 할 기술의 성격과 범위가 어떤 것인지 선택하고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을 담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우리는 기술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업의 기술전략은 급격하게 변화는 사업 환경, 기술 환경 속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로 간단히 말할 수 있지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기술 발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측면도 있다. 기업의 목적 달성은 효과적인 기술 전략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전략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기업의 포괄적인 대책이 되어야 하며 기업 전체의 차원에서 세심하게 수립, 집행되어야 할 기업의 장기적 경쟁우위의 핵심요소인 기술의 전략적 경영인 것이다.

기술전략의 프로세스와 내용에 대해 간략히 표로 나타내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함에 있어 특허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특허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허 전략이 기술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기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특허 전략

기업의 특허 전략은 크게 보면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특허 자체에 대한 전략, 마케팅 부문과의 연계에 대한 특허 전략,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될 기술전략과의 연계에 대한 특허 전략.

이러한 전략들은 각기 서로 연동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별도의 개별적인 성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 특허 자체에 대한 전략

특허 자체에 대한 전략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출원 전략이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출원 전략을 쓸 것인가?’ 가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과거 한국 기업들이 양적인 특허 출원 전략을 구사했다면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질적 출원 전략으로 변경

하여 우수한 특허 발굴에 힘쓰고 있는 것도 이러한 특허출원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 발굴을 어떤 분야에 얼마나 집중도 있게 집중하느냐와 출원 국가를 어느 국가로 한정하느냐, 대리인관리나 심사 청구 유무 관리 등 많은 것들이 출원 전략하에서 나오는 행태인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특허 매입 전략이다. 특허 매입전략은 당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 분야의 특허에 대해 누구로부터 어떠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느냐와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매입을 하느냐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 분야를 선택하는 것은 하기 설명할 기술전략과 연계되어 있지만 어떠한 가격과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여 매입하느냐는 순수하게 지재권 자체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매입대상의 특허를 어떻게 발굴할지, 정확한 가치 판단을 위해 어떻게 분석할지, 그리고 어떤 Agent를 통해 매입을 할지, 단지 특허만 매입을 할지 아니면 기술과 함께 매입을 할지 등은 특허 매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이러한 매입전략을 잘 활용할수록 효율적인 강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라이선스 협상 전략이다. 라이선스 협상 전략은 분야가 광범위하며 전략이 다양하여 딱히 어떻게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많은 전략이 나올 수 있다. 라이선스 협상을 위한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협상 진행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협상 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들이 전체 회사의 수익 구조 및 사업 전략과 맞물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순수한 특허전략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넷째로 소송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 전략은 크게 Offense 전략과 Defense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Defense 전략도 공격적인 Defense 전략과 수동적 Defense 전략으로 또 세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소송제도에 맞게 현지 변호사들과 현지 소송 절차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상황에 맞는 판단을 기초로 소송을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을 순수한 특허 전략의 범

주에 포함시켰지만, 이것도 라이선스 협상전략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전체 수익 구조 및 사업 전략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마케팅과의 연계에 대한 지식재산권 전략

국내 기업들이 특허전략을 순수한 특허 전략으로서 활용하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각 기업에 맞게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여 잘 운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허 전략을 마케팅과 연계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정 특허에 대해 특정 지역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어떠한 기능을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Design Around를 하여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분쟁 사유를 원초적으로 없애기 위해 유사 기능을 전혀 배제하고 제품을 출시할 것인지에 대한 Guide Line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기획, 마케팅 담당자들과 당연히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어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협력하는 유관부서 담당자들이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특정 지역에 어떠한 제품을 출시할 때 판매가격이 아주 중요하다. 판매가격이 너무 높으면 판매가 잘 일어나지 않으며 판매가격이 너무 낮은 경우 이익에 저해되기 때문에 적정 판매가를 책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판매가를 산정할 때 많은 Factor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첨단 산업일수록 특허료의 %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거의 대부분 제품에 있어서는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연구개발비가 차지할 것이다. 업종에 따라 편차도 크고 다양하겠지만 첨단 산업일수록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허에 대한 로열티일 것이다. 앞의 두가지 Factor는 눈에 보이는 반대급부이지만 특허료는 향후 발생할 지출에 대해 미리 Reserve해 놓는 개념으로서 적정 로열티를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것을 잘못 책정할 경우 판매에 커다란 영향을 주거나 수익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적정 로열티를 판매 원가 계산에 반영하여 판매가를 책정해

야 할 것이다.

### 기술전략과의 연계에 대한 지식재산권 전략

본 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지식재산 전략과 기술전략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지만 이 장에서는 최근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기업의 기술전략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겠다.

최근 국가 R&D전략에 특허 전략을 접목시켜 기업체에 Consulting을 수행하는 과제가 발굴되어 좋은 사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것이 불과 1~2년 전에 출범하여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특허 전략을 기술전략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점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고 더욱 더 큰 성공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특허를 분석하여 제품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타사의 특허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Design Around를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등 개별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점차 이러한 방법론들이 실제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다보면 기술전략을 위한 토대로서 특허전략이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기술전략을 위한 특허전략

기술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에 맞는 적절한 Model을 발굴, 선택한 후 많은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기술 개발의 시점부터 개발의 방향성, 개발의 난이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 Back Data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기술 투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기간을 산정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는 각 기업의 역량에 맞는 최초 기술 진입 전략, 선도자 추종전략, 모방전략 등의 전략을 선택하여 전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특허전략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 표준전략과 특허전략

기술전략의 Factor 중 하나가 표준을 어떤 것을 따를 것이며 어느 분야의 표준을 연구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 표준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표준의 방향성을 잡지 못할 경우, 시장 경쟁에서 뒤처져 따라가기 위해서는 몇 배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표준단체에서 결정되는 표준은 물론이거니와 De factor 표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표준의 방향성을 잡는데 특허 전략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허에 대해 Power를 가지고 있는 주요 role maker들이 자신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가 보유한 기술 분야와 연계성을 가지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에 대해 특허적으로 어떤 strength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가 된다면 표준의 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표준활동에 있어서도 외적으로 보이는 기술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논쟁보다 감춰진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고 받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표준전략과 특허전략은 항상 같은 배를 타고 서로 주도하고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서로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기술로드맵(TRM)과 특허전략

기술 예측 및 기술기획 기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술로드맵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별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업을 둘러싼 기술 환경과 기업이 보유한 자원 및 조직의 목표 사이에 연결고리를 제시해 주는 시간적 구조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안내서로 볼 수 있다. 기술로드맵을 활용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역량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곳으로 모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시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기술로드맵을 작성하는 방법은 기업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Model을 이용해서 작성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해당 기술분야의 특허를 분석하여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인 factor이다. 물론 특허는 공개 시점이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 이후라는 약점 때문에 과거의 기술을 현재 시점에서 파악하는 시점적 불합치가 있을 수 있으나 특허 기술이 현재 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술

만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적용 가능한 기술을 현재 시점에 출원하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전 출원 기술이라고 해도 충분히 현재 시점의 기술 방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facto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허에 대한 분석방법은 기술로드맵과 비슷하게 특허맵을 작성하여 특허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지만 이것도 작성하는 목적이나 기업의 환경에 맞는 다양한 Model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술 개발 동향 파악이나 기술 개발 테마선정 혹은 틈새 기술 파악 등을 위해서는 Matrix Map, 기술 상관 Map, 기술 분포 Map 등이 쓰인다.

### 특허 출원 전략과 기술 로드맵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면 여기서 표현된 다양한 정보들은 다각도로 활용된다. 신기술 개발에 대해 어떤 기술에 대해, 어떠한 규모로 어떤 자원을 활용하여 투자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 로드맵을 활용하여 특허 출원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기술 개발과 더불어 발명의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특허가 출원될 수도 있지만 강한 특허를 발굴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연계되지 않는 특허 창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지식재산의 획득을 그 자체로서 회사의 value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서 출발하여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기술로드맵에서 표현된 향후 3~5년 내의 미래 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특허 출원을 할 경우 그만큼 권리 범위가 넓은 특허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효율적 신기술 개발과 특허 전략

기술전략에 의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을 분석,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지속적인 특허 분석에 의해 나온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잡아가며 청구항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술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기존의 특허를 분석해 보면 문제에 대한 다양한 Solution을 찾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의 보호와 특허전략

어렵게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획득된 결과물을 기업의 이익으로 반영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Know-How로 기업 내에서만 Confidential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특허로서 20년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전략적으로 어느 것이 더 기업에 유리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Case by Case로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것을 택하던지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허로써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국가에 등록받아야 하는지 하나의 특허로 출원해야 할지 전방위적 보호를 위해 특허군을 형성하여 출원을 해야 할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기술전략을 위해 특허전략이 기여하는 바는 상기 기술된 것 이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간략히 5가지 정도로 요약했다.

기업의 성공을 위해 기술전략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기술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허전략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허전략을 잘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기업의 주요 임원진들의 특허 경영에 대한 Mind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무진에서는 이러한 경영층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행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국발명진흥원



#### 황 차 동

현재 팬택계열 기술전략팀 팀장  
 팬택계열 특허팀 과장  
 하이닉스 반도체 특허팀 소수업무  
 연세대 산업재산권법(법학 석사)  
 연세대 물리학과(이학사)  
 논문 : 로열티요율 산정요건에 관한 연구  
 저서 : 국제 라이선스 계약 (공저)



## 특허 공공 공약법

기업이 특허를 내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많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벌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특허를 수익 모델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어떻게 해서든 연결시켜야 예측가능하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소기

업이 특허를 이용하여 여러 수익분야 중에 특히 공공조달시장을 공략하는법”에 대해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해 보겠다.

중소기업 분야의 공공조달시장은 마치 딱딱하고 투명한 캡슐 안에 있기 때문에 내용물은 눈에 훤히 보이지만 뚫고 들어가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일단 캡슐 안에 들어간 기업은 안에서 물 만난 고기마냥 유유자적 돌아다기곤 한다. 먼저 공공조달시장이 일반 여타시장과의 다른 속성을 살펴본다면 첫째, 수익의 근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둘째, 집행되어지는 과정이 법과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는 것. 셋째, 집행자가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경쟁의 룰 또한 위의 세가지의 특징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운동경기를 보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룰을 정확히 이해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박빙의 실력 하에서는 승리의 추를 내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는 요령일 것이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요구되는 경기력은 특수한 최첨단의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고 낮은 품질은 더더욱 아니므로 경기력의 수준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다. 공공조달시장 하에서는 경쟁의 룰을 가장 잘 이해하여 내 것으로 만든 기업이 승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하는 룰은 분야와 업종에 따라 다소 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3단계로 나눌 수 있겠다. 1단계는 명분을 득하는 것이며 일반중소기업은 인 증이나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단계이다. 그럴려면 첫째, 기술의 신규성, 즉 세계 에서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만은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어야 한다. 둘째, 기술의 진보성. 기술의 난이도 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통용성. 과거나 미래의 시대가 아닌 지금의 시대에 수요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위의 세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2단계는 휴먼네트워크 즉, 인맥이다. 학연, 지연도 중요하지만 발로 뛰는 맨투맨 영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야 한다. 1,2단계를 충족하였다면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캡슐 안으로 집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더 확실한 독점의 기술을 발휘하려면 3단계 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

첫째, 기술의 포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형태에 맞추어 상당 퍼센트의 기술을 가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예산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항상 이 전년도에 일반적인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예산이므로 제품은 보유 기술로 특화시키되 그 예산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용목적에 따라 적용성이 뛰어나야 한다. 수요처의 예산집행인이 같은 값에 보다 더 효과적인 기능을 득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제품개발단계에서 신규성, 진보성, 통용성, 포괄성, 예산성, 적용성의 6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휴먼네트워크를 가미한 기술영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소기업으로서 공공조달시장을 공략하는데 최상의 케이스라 하겠다. 위 6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만족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특허가 있어야 한다. 즉 1단계의 3가지 신규성, 진보성, 통용성은 특허의 기본 요소들로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권리를 보다 국한시켜서 전문성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3단계의 3가지 포괄성, 예산성, 적용성은 수요처(공공기관)의 기관별 구매 방식이나 예산이 형성되는 형태와 시기를 인지하여야 하며 구매 목적물을 최대한 용도에 맞춤형으로 세분화하고 여기에 특허적 기술을 가미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공략하는데 있어서 특허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허에 요구되어지는 사항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일 수 있다. 과거 20여 년 동안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 군림해 왔던 단체 수의계약제도가 없어진지 2년 여가 되었고 중소기업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던 여러 관변단체들도 명분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이 과도기라 하겠다. 이럴 때 특허정신으로 무장된 실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전략적 특허를 영업무기로 잘 활용만 한다면 공공조달시장에 신흥강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발명진흥회**





**김 배 훈**  
 (주)영국전자 대표이사.  
 2003년 특허청 신지식인.  
 2004년 중소기업인 대회 대통령상.  
 2004년 제네바 국제 발명전 금상, 러시아 대표부상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공동상속인 [법일반]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형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동발명자 [특허]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전원이 공유하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함.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발명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동일하며, 따라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사상의 구체적 사상 또는 완성에 직접 관여한 실질적 협력자이어야 함.

## 공동발명 [특허]

2인 이상의 자가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킨 경우 공동발명이라 함.

## 공동대리 [지재권 일반]

법률행위의 대리권이 2인 이상에게 귀속하는 대리형태.

## 공동권리자 [법일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2인 이상의 권리 향유 주체를 의미함. 공동권리자의 경우 처분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공동결의안 [지재권일반]

WIPO 산하 각종 상설위원회에서 타결한 관련 규범 또는 규정의 권고안을 매년 9월경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WIPO 총회 시 파리동맹과 공동결의로 각국에서 이 규범 또는 규정에 따라 자국의 법제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에서 채택되는 것. 대표적인 것으로 1999년 9월 채택된 유명상표보호규범과 2000년 9월 채택된 상표사용권 규정안 두 가지가 있음.

##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디자인]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디자인보호법 제6조 제2호)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 상표권 소진이론 및 병행수입에 관한 국내외 비교법

## I. 진정상품 및 병행수입의 의의

1. 진정상품의 의의
2. 병행수입의 의의
  - (1) 병행수입의 문제
  - (2) 병행수입의 발생원인
  - (3) 병행수입의 효과

## II. 병행수입 금지이론과 허용이론

1. 금지이론
  - (1) 속지주의원칙
  - (2) 특허(상표권) 독립의 원칙
2. 허용이론
  - (1) 권리소진이론
  - (2) 상표기능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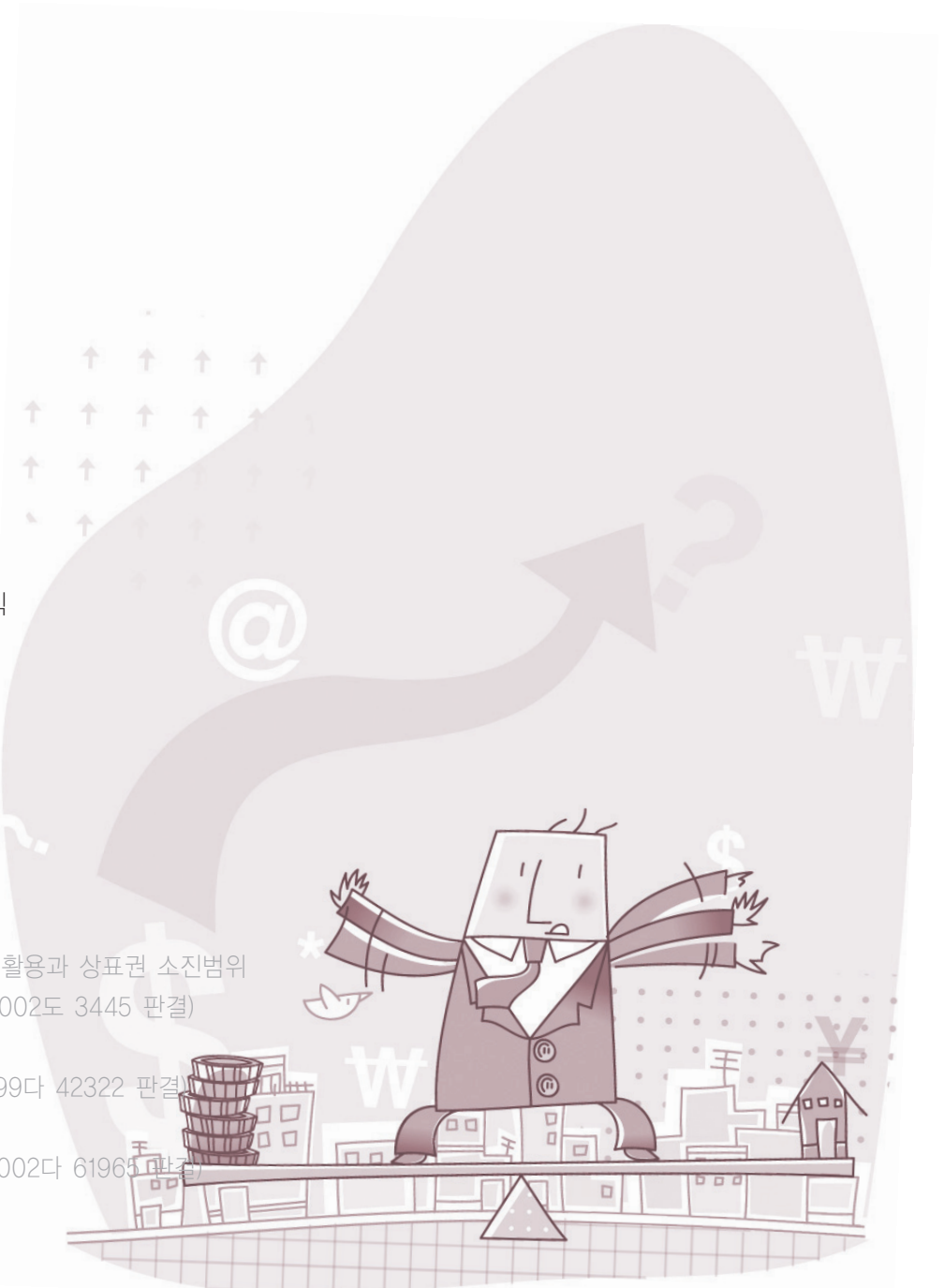
## III. 각국의 제도비교

1. 미국
2. 유럽
3. 한국

## IV. 연구판례

1. 타인상표 새겨진 포장용기 재활용과 상표권 소진범위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 3445 판결)
2. 병행수입과 광고허용의 한계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 42322 판결)
3. 병행수입의 상표권침해 여부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 61965 판결)

## V. 결론



## I. 진정상품 및 병행수입의 의의

### 1. 진정상품의 의의

진정상품(genuine goods)이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sup>1)</sup> 여기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라 함은 특허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등을 말한다. 따라서 진정상품은 적법한 사용 권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이 아닌 위조 상품과는 구별된다. 미국에서 이러한 진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gray market이라 하고 진정상품을 gray goods라 부른다. 이는 진정상품이 위조 상품은 아니지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사용허락지역으로부터 사용허락지역 이외의 국가로 들어온 상품이므로 권리자가 사용허락지역 안에서 생산하였거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어 사용허락지역 안으로 들어온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 2. 병행수입의 의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sup>2)</sup> 지적재산권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나라에서 동일상표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제조, 판매되는 상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병행수입은 일정한 기준 하에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동일 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인위적으로 커다란 내외가격차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경제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특히, 특허제품의 경우, 외국에서의 특허권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된 특허에 관한 진정상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후에 제3자에 의해 국내에 수입되는 현상을 말하고, 저작물의 경우, 외국에서 적법하게 제작 또는 복제된 저작물이 국내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표품의 경

우,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판매됨으로써 국내에서 적법하게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 (1) 병행수입의 문제

병행수입품은 진정상품이라는 점에서 위조 상품과는 다르고,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특허권자, 상표권자, 전용설정권자, 독점계약자 또는 저작권자가 허용하지 않는 유통경로를 통해 일어나는 점에서 권리자의 이익침해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병행수입품은 대체로 국내의 합법적인 유통망에 의해 팔리는 제품보다 싼 가격으로 내놓기 때문에, 이것이 허용되면 제조자의 배포 통제능력이 잠식되고, 지역 전용설정권자나 독점업체의 이익도 보장해주지 못하게 된다. 또한 병행수입품은 제조자에 의한 보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조자 등 권리자가 쌓아온 신뢰도(good will)에 해를 끼친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것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제조자 등 권리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 (2) 병행수입의 발생원인<sup>3)</sup>

병행수입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상상품의 국내외의 가격차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어느 한 가지 원인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제2조제1항  
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제2조제3항  
3) 도성민, 진정상품 병행수입 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6면

결합되어 나타난다.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원인별로 보면 크게 상표권자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병행수입업자가 원인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상표권자로부터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국적 기업이 의도적으로 국가별 가격차별화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제조업자가 과잉생산된 제품이나 재고품 등을 국외에서 덤핑할 때 가격차이가 발생한다. 병행수입업자가 가격차이의 원인인 경우를 보면 병행수입업자가 우수하고 효율적인 유통망과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표권자 또는 지정대리인 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경우,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 또는 지정대리인이 이루어 놓은 상품의 인지도에 무임승차하여 광고·선전·비용 등의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을 이룬 경우이다. 그밖에도 국제적인 환율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다.

### (3) 병행수입의 효과

#### 가. 긍정적인 효과

병행수입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독점적인 가격차별화의 해소, 경쟁의 촉진, 소비자의 선택범위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병행수입이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가격차별화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병행수입으로 국제적 가격격차가 해소되고, 소비자들이 지정대리점과 병행수입업체들 중에서 선택하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은 가격인하를 촉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병행수입으로 인해 동일 상표 제품에 대해 경쟁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유통비용과 경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유통망과 경영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 또,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크기, 색상 등의 차이가 있는 다양한 제품이 수입되므로 소비자가 자신의 기호에 맞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된다. 이는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강조하여 일단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면 상표권자의 권리는 소진된다는 소진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 나. 부정적인 효과

병행수입의 부정적인 효과로는 지적재산권자의 권리약화,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 기업들의 제조업 기피와 수입업자로의 전락 등을 들 수 있다.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나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진정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상표를 시장에 알리기 위해 광고, 선전비나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 등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데 반해 병행수입업자들은 이들의 노력과 비용에 무임승차하여 부당한 이익을 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싼 가격의 병행수입품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동일한 상표이지만 품질이 좋지 않는 제품이 수입될 경우, 상표권자가 구축해놓은 상표의 신용과 명성(goodwill)이 손상될 수 있다.

## II. 병행수입 금지 이론과 허용 이론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은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속지주의 원칙과 특허(상표)독립의 원칙인데, 그 근거는 파리조약에서 찾을 수 있고,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논거로는 권리소진의 이론(The 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과 상표기능론 등이 있다.

### 1. 금지이론

#### (1) 속지주의 원칙

병행수입 금지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이론이다. 속지주의 원칙 각국에서의 상표권의 성립·소멸 등은 그 나라의 법률에 따르고 상표권은 서로 독립하여 병립한다는 상표권독립의 원칙과 함께 상표권의 효력, 변동, 소멸은 그 권리를 부여한 그 국가의 국내에서만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sup>4)</sup>

이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면 각 국가에서 독립한 상표권과 goodwill의 존재를 인정하므로 상표가 적법하게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일지라도 병행수입은 국내의 상표권 침해가 된다. 파리조약 제6조 제3항도 “동맹

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는 본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에 등록된 상표와 독립한 것으로 간주 된다.”고 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이 속지주의 원칙 하에서 상표권의 효력은 국내적 사실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그에 상응하는 상표권을 외국에서 소유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즉, 외국상표권의 성립은 국내 상표권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다. 즉, 한 나라에서 성립된 지적재산권은 다른 나라에서의 지적재산권과는 무관하므로, 수입품이 진정상품이라도 수입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진정상품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수입되어 유통될 때에는 그 상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 (2) 특허(상표)권 독립의 원칙

파리협약<sup>5)</sup> 제4조 제1항에서는 “동맹국의 국민에 의하여 여러 동맹국에서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동맹국 또는 비동맹국인가에 관계없이 타국에서 획득된 특허와 독립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협약 제6조 제2항에서는 “어느 동맹국 국민에 의하여 여하한 동맹국에서 출원된 상표의 등록신청도 그 출원, 등록 또는 갱신이 원 국가에서 실시되지 않음을 이유로 거절될 수 없으며 또한 그 등록이 무효화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 제항<sup>6)</sup> 등에 근거하면 각국의 산업재산권제도는 각국의 산업보호의 정책에 따라 독립되어 발전한 것이므로, 각국에서의 상표권의 효력은 다른 나라에서 부여된 권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상표권의 성립, 무효, 소멸, 존속기간 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각국마다 독립하고, 타국의 상표권과 독립하여 병존한다는 의미이다.

## 2. 허용이론

### (1) 권리소진이론

#### (The 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

영미법에서는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으로도 불리는 소진이론은 독일에서 출발하였다. 권리소진이론은 속지주의 원칙을 극복하고 병행수입으로의 길을 열기 위한 이론구성으로서 국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권리소진이론이란 특허나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물품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판매, 양도 또는 license를 하면 그 자신의 권리는 소진되어 그 물품을 매수, 양수 또는 license받은 새로운 권리자가 자신의 물품을 재판매 등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원래의 지적재산권자(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재판행위 등을 금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상표권에서의 소진이론은 상표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상품을 최초로 제조·판매함과 동시에 소진된다는 것이다. 상표를 일단 적법하게 사용하여 제품을 유통하게 하였을 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표권은 이미 소진되었으므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와 품질보증의 기능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기능이 만족되고 있는 한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품을 정상적으로 시장에 출하하면 그 상표권에 대한 상

4) 고용부, 관세법령상 병행수입의 허용기준에 관한 연구, 2003, 407면

5) 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1883,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초 국제조약으로 6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전문 30개조로 구성되었음.

6) 파리조약에 의하면 동맹국중 어느 한 국가에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는 본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에 등록된 상표와 독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지역적 효력은 당해 동맹국 내에서만 국한되며 제3자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로 동일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권자의 권리는 소진된다는 것이다.

소진이론은 그 적용범위에 따라 국내적 소진(domestic exhaustion)과 국제적 소진(international exhaustion)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국내적 소진이란 지적재산권 관련 상품이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에만 소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자는 외국에서 자신이 적법하게 유통시킨 상품의 병행수입도 국내외 지적재산권에 의해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국제적 소진은 지적재산권자가 어디에서 상품을 유통시켰는지를 불문하고 한번시장에 상품을 유통시킨 경우에는 그 지적재산권이 소진되었다고 본다.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많은 판례들이 이 소진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①병행수입품의 眞正性 즉 외국에서 당해 상표권자 자신 및 실시권자 또는 이들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 의해서 표장이 적법하게 사용(제조)되어지고, 학포(판매)되어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②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표에 대한 국내외에 있어서의 실질적 동일성 즉 국내 상품의 표장과 외국에서 적법하게 학포되어진 상품의 표장 사이에 그 표시하고 보증하는 출처 및 품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진정 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③ 외국에서의 상품의 학포 등이다.

이중 특히 주체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표권자의 실질적 동일성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경우, 국내외 상표권자를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인정하는 것이 추세이다. 즉, 전용사용권자, 수입국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 및 판매자와의 사이에서 법률적 관계(외국 상표권자의 대리인 총판 매대리점 등) 또는 경제적(외국상표권자와 콘체른 관계)으로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병행수입이 인정된다, 이 이론은 상표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특허권,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병행수입 허용론이다.

## (2) 상표기능론

상표기능론은 Cinzano 판결<sup>7)</sup>로 대표되는 서독 판례의 입장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상표제도는 원래 상표의 기능보호를 통하여 상표권자의 신용과 영업질서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상표권의 기능은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에 있는 것이지 상표권자에게 국제시장의 독점지배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표의 이러한 본질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의하여 상표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것은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기능이 저해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상표를 붙인 자와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동일인 또는 법적, 경제적, 기술적 혹은 계약상의 결합관계가 있는 경우, 즉,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해하지 않고 품질상의 차이가 없으며 공중에게 오인 혹은 혼동을 생기게 할 위험이 없어 상표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병행수입을 허용한 것은 상표기능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기준으로 병행수입이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7) 서독 연방재판소, 1973. 2.2.

8) 보편성론(the principle of universality)에서 상표권은 상품의 출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 출처란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생산자 내지는 제조업자만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상표권자의 제조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인 경우 혹은 원래 상표권자 통제 하에 생산된 경우 상표가 그 출처인 진정한 생산자,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있으면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수입국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 Ⅲ. 각국의 제도비교

#### 1. 미국

##### (1) 병행수입 관련입법

병행수입에 관한 미국의 규정 및 태도를 보면 상표법에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초기에는 보편성 원칙<sup>8)</sup> 법원은 처음에는 보편성원칙에 따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입장이었다. 예컨대, Apollinaris v. Scherer사건에서 법원은 보편성 원칙에 따라 피고가 지정상품을 수입해 판매하였고, 수입된 미네랄 워터의 출처에 관하여 공중이 기망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상표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없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병행수입의 허용이 공중에 대한 기망보다도 상표권자에 대한 기망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는 속지주의 원칙에 주목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1923년 Bourjois 사건 판결이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병행수입을 금지시키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병행수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23년 미국 관세법 제 526조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가. 관세법 제526조(1923년 제정)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미국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어떤 상표에 관해 미국시민, 또는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 단체가 그 상표권자이고 또 그 상표가 미국에서 소유를 갖는 자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그 상표를 붙인 외국제 상품의 수입도 상표권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위법이 된다.<sup>9)</sup>

나. 관세청 규칙 제 133.21조(1972년 공포)의 관세법 제 526조의 적용예외규정

- ① 외국상표와 내국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인 경우
- ② 외국상표와 내국상표의 상표권자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거나 공통의 소유 또는 지배에 복종하는 경우

③ 외국상품에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등록상표가 붙여져 있는 경우

관세법 526조 예외규정의 적용에 의해 1980년대부터 병행수입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에 따라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미국의 상표권자의 법적투쟁이 있었고 K-Mart<sup>10)</sup>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예외규정의 3항을 무효로 하여 마찰을 해결하였지만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어서 관세법 제525조의 관세청 예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들 간에 서로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 (2)주요판례

초기 판결은 보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병행수입을 허용하였으나 1923년 Bourjois 사건 판결이후 속지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금지시키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2년 관세청 규칙의 제정이후 이를 지지하는 판결과 이를 무효로 보는 판결이 대립되어 병존 상태에 있었으나, 1988년 K-Mart 사건 판결로 방향이 정립되었다,

가. Bourjois 사건<sup>11)</sup>

프랑스의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얼굴분의 판매를 위하여 “Java”라는 상표의 미국 내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었는데 그 상표는 원래 프랑스 제조업자가 미국 내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상표 등록한 것으로서 그 사업체와 함께 “Java”상표의 미국 내 상표권을 원고에게 양도했다. 그 후에 원고는 동일한 얼굴 분을 프랑스 제조업자로부터 수입하여 그 제조업자가 사용한 것과 유사하

9) 동조는 미국인인 상표권자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어떤 상품의 상표권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회사이면 그 상표를 붙인 외국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권한을 상표권자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의미이다.[임영환,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규제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8 28-29면]

10) K Mart Corp. vs Cartier Inc. 사건으로 미연방대법원은 미국회사와 외국 제조업자 사이에 경영주체의 동일성이나 연합관계가 있다면 그러한 진정상품 수입에 대하여 미국상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1) A. Bourjois & Co. v. Katzel, 275 F.539(2d Cir.1921) revd 260 U.S. 689(1923)

게 포장하여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는 프랑스 제조업자로부터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Java” 상표가 부착된 진정한 얼굴 분을 수입하여 원고의 용기와 유사한 포장용기로 미국 내에서 판매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최종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여 승소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속지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문제의 상품을 원고가 제조하지 않고 프랑스에서 제조하였을지라도 공중이 그 상품을 원고에게 유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상표는 미국에서는 오로지 원고의 상표이고 법률상 원고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상표를 부착한 상품은 원고가 축적한 신용을 바탕으로 하여 유통되었고 유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을 이전까지 보편주의에 입각해 병행수입을 허용했던 선례를 속지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병행수입을 금지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 나. Vivitar 사건

원고 Vivitar는 캘리포니아 회사로서 미국 내에서 “Vivitar” 상표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Vivitar와 주식소유관계가 전혀 없는 同社의 해외사용권자에 의하여 제조되고 “Vivitar” 상표가 부착된 사진장비가 Vivitar사의 서면동의없이 미국 내로 수입되고 있었다. Vivitar사는 상표라이선스를 하면서 미국외 지역에서 판매하도록 계약조항을 두었다. Vivitar사는 미국 관세청이 이러한 허가받지 아니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명하는 선언판결(Declaratory Judgement)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병행수입 허용판결로 국제무역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으며 연방항소법원 또한 관세청이 수입

품에 부착된 상표와 관세청에 신고된 상표사이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행정적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상표권자가 상표침해결정 및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문제의 수입품을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결국 관세청 규칙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권자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피고의 병행수입을 인정하였다.

## 2. 유럽연합(EU)

### (1) 병행수입 관련 입법례

EU의 경우에는 역내 국가 간의 적용되는 규칙과 역외 국가 간에 적용되는 규칙이 서로 다르다. 역내 국가 간에는 공동체 시장을 통합한다는 이념 아래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급적 보장한다는 경쟁적 입장에서 병행수입을 다루고 있는 반면 역외국가로 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역내의 상표권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각국이 자국의 법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다.

EU 역내 국가 간의 병행수입의 문제에 있어서 초기 판례에서는 로마조약 제85조<sup>12)</sup> 및 제86<sup>13)</sup>조에 의거하여 해결하려 하였으나, “자유로운 상품 유통의 원칙”의 관점에서 로마조약 제30조<sup>14)</sup> 및 제36조<sup>15)</sup>에 기하여 병행수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 판례는 소진이론에 입각하여 병행수입을 허용해 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이 있을 경우는 병행수입이 금지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소진이론에 입각하여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EU 역외 국가 간의 병행수입에 대해 EU 사업재판소(ECJ)는 권리소진이론을 인정하지 않고 수입을 위해서는 원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2) 주요 판례

#### 가. Cinzano 사건<sup>16)</sup>

이탈리아의 유명한 Francesco Cinzano 주식회사

12) 제85조 가맹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공동체 시장 내의 자유경쟁저해, 제한 또는 왜 곡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 간의 합의, 기업 연합의 결의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3) 제86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에 의한 공동시장의 중요한 부분에 의하여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14) 제30조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 원칙을 규정하고 조약국간 보호를 위해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15) 제36조 로마조약 제30조에 대한 예외로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의 허용 및 이의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16) 서독 연방재판소, 1973. 2. 2.

에 의해서 서독에 설립된 자회사로서 서독 내에서 Cizano 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는 그의 모회사가 이탈리아에서 제조한 Cizano 베르뭇술을 수입하여 이를 병에 담아 Cizano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함부르크에서 커피 및 주류를 판매하고 있던 피고가 원고의 모회사의 다른 스페인 자회사 및 프랑스에 있는 Cizano 상표의 사용권자로부터 동상표가 부착된 베르뭇술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과 품질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원고는 프랑스 및 스페인에서 제조된 베르뭇술과 이탈리아 모회사가 제조하여 자신이 서독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베르뭇술은 그 성분과 맛에 있어서 현저하게 다르고 피고가 그 제품을 서독에 수입하기 전 10년 동안은 자신의 제품만이 서독에 공급되었으며 Cizano 상표가 부착된 베르뭇술은 모두 이탈리아산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에 의한 스페인산 및 프랑스산 베르뭇술의 판매는 소비자들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Cizano 상품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금지청구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서독 연방대법원은 상표의 유일한 기능은 출처 표시기능이므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품질이 균등하다는 것을 상표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행 수입된 진정상품의 품질이 국내 동일한 상표로서 국내 상표권자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품질에 차이가 있더라도 병행 수입된 진정상품은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고 외국제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한 것이다.

서독에서의 병행수입에 관한 선례로서 독일법 하에서 병행수입의 문제는 이 판결에 의하여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평가된다.

#### 나. Lux 사건<sup>17)</sup>

스위스의 비누회사인 Sunlight 사는 미국의 비누제조업자인 American Lever Bros. Co.와 동일 기업체에 속하여 두 회사는 모두 비누에 Lux라는 상표를 사용하

였다. Sunlight사는 스위스 수입업자가 미국에서 진정상품인 Lux 비누를 스위스로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의 상표권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Sunlight사가 과거 30년 이상 스위스에서 독립하여 신용을 형성하여 온 점에 주목하면서, 상표는 1차적으로 출처표시라는 관점에서 혼동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병행수입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국제적 소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스위스 회사가 미국회사와는 독립하여 독자적인 신용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회사가 독자적 신용을 쌓기 위해 들인 비용과 소비자들의 혼동 우려를 고려하여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발명진흥회**

다음호에 계속



17) 스위스 연방재판소, 1952. 2.12

# Bilski 판결이후: 방법특허 출원 및 소송 대응전략 고찰

## IV. 바이오 분야 방법 특허에 대한 영향

Bilski 판결은 컴퓨터, 인터넷 등 IT를 기반으로 한 영업방법 발명 외에 10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방법 즉 모든 유형의 Process 특허에 적용될 수 있다. BT 분야의 치료, 진단방법도 특허적격한 발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M-T 테스트의 적용대상에 포섭되고 있다.

CAFC는 최근 케이스에서 Bio 분야 방법발명에도 Bilski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Classen 케이스<sup>40)</sup>에서 다양한 백신스케줄에 대한 위험평가에 대한 방법을 청구항<sup>41)</sup>으로 하고 있는 원고의 특허는 Bilski의 M-T 테스트에 의해 “특정기계 또는 장치에 연결”된 것도 아니고, “특정 article을 다른 상태로 변환한 것”도 아니라는 무효 결정을 내렸다. 본건의 원심은 Bilski 판결이 나오기전 2006년에 매릴랜드 연방지법에서 다루어졌다. 매릴랜드 지법은 약식판결에서 원고의 쟁점 발명은 면역화단계(immunization step)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해결행위(insignificant activity)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고, 만선질환과 백신스케줄과 상관관계라는 자연적인 현상 또는 아이디어 자체를 특허로 받으려는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 받을 수 있는 적격한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CAFC는 원심법원과 결론은 같이하였지만 판결이유에서는 Bilski 기준을 인용하여 다른 테스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Prometheus Lab., Inc. v. Mayo Collaborative Services<sup>42)</sup>에서는 CAFC는 면역조정 위장장애치료를 위한 치료효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특허(U.S. Pat. 6,680,623)<sup>43)</sup>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본건 특허는 독성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투약량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6-thioguanine을 제공하는 약을 어떤 대상에 투여하는 단계와 그 대상에서 6-thioguanine 레벨을 결정하는 방법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원심법원은 쟁점 청구항은 “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환자 데이터를 연구함으로써 “발견”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방법 특허를 허여하게 되면 자연현상의 모든 실용적인 사용을 전적으로 차단할 것이므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CAFC는 치료방법도 101조 방법 발명의 범주에 포함 됨을 재확인하고, 쟁점 청구항의 치료단계인 약물투여와 약품의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조절하는 단계는 본 발명의 목적인 인체의 치료에 관한 변환(transformation)을 수반한 것이므로 Bilski의 변환기준을 충족한다라고 판시하였다.<sup>44)</sup> Bio 분야는 발명의 성질상 IT와 달리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변환을 유발한 것인지에 대한 변환 테스트가 적용될 여지가 많다. 변환테스트 적용시에도 CAFC는 방법을 구성하는 개별 단계(step)에 대한 검토가 아닌 모든 단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발명의 목적에 합치된 변환을 생성하거나 유발한 것인지를 주요 판단 요소로 삼고 있다.

이처럼 Bilski 결정은 Bio 분야의 방법발명의 특허성 판단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대법원 결정의 향방에 따라 상당한 여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연방 대법원에 상고 신청했다가 기각된 LabCorp케이스<sup>45)</sup>에 M-T 테스트 프리즘을 적용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sup>46)</sup> 이 케이스에서 쟁점 특허는 호모시스테인 총량의 증가된 레벨로 체액을 검사함으로써 채내 단백질 레벨과 비타민 B결핍을 서로 관련 시키는 방법과 호모시스테인 총량의 증가된 레벨과 엽산 결핍을 연관시키는 방법을 발명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sup>47)</sup> Bilski 이전에 피고는 해당 청구항은 특허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당초 이 케이스를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나중에 이 케이스가 부주의하게 심리 허용 결정이 되었다면서 기각을 하였다.<sup>48)</sup> 그러나 반대의견

은 이 특허는 무효가 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만약 이 케이스에 M-T 테스트를 적용하였다면 특허무효 결정이 되었을 수도 있다.<sup>49)</sup> 본건 방법특허 청구항은 기계나 장치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특허의 유효성을 지지받기 위해서는 변환 테스트에 따라 특정 물성(particular article)을 다른 상태 또는 것(different state or thing)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 특허청구항에서 상호 연관시키는 방법의 단계(correlating steps)는 의사가 혈액검사 결과를 단순히 관찰하고 진단하는 행위를 포괄할 만큼 넓게 해석될 수 있어 전적으로 의사의 정신적인 작용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그러한 단계는 혈액테스트를 변환(transform)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체액을 검사하는 단계(assaying step) 또한 변환 요건을 성립하고 있지 못한 부차적인 또는 사후 해결(extra - post solution)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40) Classen Immunotherapies, Inc., vs. Biogen Idec, et al., Civil No. WDQ-04-2607(8.16, 2006); 304 FEd. Appx.866, 2008 WL5273107(C.A.Fed.(Md))

41) 대표적인 쟁점 특허 5,723,283의 청구항은 다음 방법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immunization of a treatment group; and 2) a comparison of the incidence of chronic immune mediated disorders in the treatment group relative to a control group.

42) Prometheus Laborative Services vs. Mayo Collaborative Services, 581 F.3d 1336 (Fed.Cir., 2009)

43) 623 특허는 3단계로 구성됨: 1) administer the drug to a subject; 2) determine metabolite levels; and 3) be warned that an adjustment in dosage may be required.

44) 기계 기준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45) LabCorp v. Metabolite Laboratories, Inc., 548 U.S. 124.(2006)

46) 예, Sunhee Lee & Dr.Janice Lee, What's coming in pharmaceutical industries in 2009, IP report, Pharmaceutical Processing.

47) 쟁점 청구항 13: "A method for detecting a deficiency of cobalamin or folate in warm-blooded animals comprising the steps of: assaying a body fluid for an elevated level of total homocysteine; and correlating an elevated level of total homocysteine in said body fluid with a deficiency of cobalamin or folate."

48) 대법원은 5:3의 표결로 상고허가(writ of certiorari)를 기각하였다.

49) supra note 43.

## V. 특허 출원 및 소송 대응 전략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시 Bilski 이후 USPTO로부터 특허법 101조를 인용한 거절의견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소송에서도 101조에 의한 피고의 특허무효 항변지위도 강화되었다. 대법원의 1차 심리에서 판사들의 방법특허의 발명물에 대한 관점과 견해를 미루어 볼 때 방법특허에 대한 M-T 테스트가 의도하는 연방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크게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방법특허를 원하는 출원인과 이미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특허권자에게는 Bilski 이후 까다로워진 심사와 M-T 테스트의 엄격한 적용에 맞추어 보다 세심한 출원명세서 작성과 소송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출원·심사·등록후 특허관리단계별로 Bilski에 따른 USPTO 및 법원의 실무 변화에 대응한 특허 확보 및 유효 관리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특허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출원인은 IT, BT 등 모든 기술분야를 망라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Bilski 관점을 채용하여 출원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유의할 때 특허거절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출원명세서에는 발명의 기술적 측면에서 상세하고도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당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만들고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특허출원이 방법청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뒷받침하고 있다면 그 방법에 의거한 데이터의 기술적인 변환(technical transformation)<sup>50)</sup>에 관한 내용을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데이터 수집이 변환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과의 단순한 결합 이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up>51)</sup>

명세서에는 방법발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계나 장치(예, 라우터, 무선통신장치, 모바일 폰, 컴퓨터 등)를 명시해야 한다. 가급적 복수의 실시례와 구성(embodiments)이 명세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USPTO 심사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체로 어떤 특정기계나 장치는 방법 청구항의 어떤 하나의 작동이나 실행에 연결되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그 기계나 장치가 부수적인 해결(extra/post-soluton) 행위로서 청구항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출원서에는 시스템과 뷰리가드(Beauregard) 스타일 청구항을 포함해야 한다. 최근 BPAI 결정과 새로운 PTO 의 방법 특허에 관한 심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뷰리가드 청구항의 등록허여결정을 얻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방법 청구항이 기계를 포함하거나 어떤 물성(Article)을 변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두가지 추가

50) CAFC는 Bilski에서 변환(transformaton)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 해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CAFC나 연방지법의 구체적인 케이스 적용사례를 참고할 밖에 없다. In re Abele, 684 F.2d 902(CCPA 1982)(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알고리즘에 추가하는 정도는 알고리즘을 전환했다고 볼 수 없다) In re Grams 888 F.2d 835, (Fed. Cir. 1989)(임상테스트 실시와 그 테스트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기초해 비정상성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는 단계는 어떤 article을 전환한 것이 아니다)

51) Stephen C. Durant & et. al., In The Aftermath of In re Bilski, 983 PLI/Pat 17, 23(2009.9.-11.)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허가능한 발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기계 또는 변환한 것이 청구항의 범위에 의미있는 제약을 가해야 하고, 기계 또는 변환한 것이 권리가 청구된 발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변이 아닌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sup>52)</sup> 이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CAFC나 대법원의 향후 추가 판결을 통해 명료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청구항 작성시 방법발명의 목적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청구항 단계간의 관계와 작용이 발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청구항과 명세서를 세밀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아직 충분한 케이스 축적이 되고 있지 않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에는 시기 상조이나 앞서 살펴본 Prometheus와 Classen 케이스가 시사해 준 바 처럼, 방법 단계간의 단순한 상호관계를 기술하는 정도를 넘어 방법발명의 효과나 효능 및 목적의 달성의 구체적인 구현을 수반하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 기 출원 중인 경우

심사절차에 계류 중인 출원건에 있어서 M-T 테스트 중 기계(machine)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정정이 필요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방법발명의 청구항의 작동(실행)중의 어느 하나에 명세서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특정 기계나 장치를 연결하도록 한다. 일부 심사관들은 심사초기단계에서 방법발명의 작동(실행)부분 하나 하나에 특정의 기계나 장치를 연결할 것을 요구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오직 하나의 방법 실행만이 어떤 특정 기계나 장치에 연결되면 된다는 설명을 제공하는 정도로 설득이 가능할 수 있다. 방법발명의 여러개의 작동(실행)에 반드시 추가적인 제약을 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방법발명의 작동(실행)이 post- 또는 extra- 해결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방법발명 청구항의 작동에 연결되어 있는 특정기계를 반영하기 위해 가능하면 광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모바일 장치(mobile device)가 셀폰에 비해 보다 적당할 것이다. 특정 기계를 어느 하나의 방법 작동에 연결하기 위해 청구항을 수정하기 전에 그 청구항이 현재 최소한 어떤 물성(article)

을 다른 상태 또는 현상으로 변환한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는 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변환된 것으로 주장할 수만 있다면, 출원인은 불필요하게 청구항을 감축하는 것을 피하고 청구항 정정없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USPTO에서 새로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할 때 심사관들간에 가이드라인 해석과 적용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Bilski와 관련된 M-T 테스트 역시 심사관들과 인터뷰를 가짐으로써 심사관들간에 해석에 차이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극복가능할 것이다. 출원서 청구항의 서문(preamble) 수정만으로는 방법과 기계 또는 장치 연결 부분을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치실행방법” 또는 “컴퓨터실행방법”은 M-T 테스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sup>53)</sup>

사실 변환 요건의 충족은 특정 청구항에서 어떤 물성(article)을 다른 상태 또는 현상으로 변환한 것인지를 주장할 수 있는 출원인(대리인)의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최초의 출원서상에 어떻게 그 물성이 다른 상태나 현상으로 전환된 것인지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기술할수록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sup>54)</sup>

Bilski 유형의 거절에 관해서는 심사관과 인터뷰를 갖는 것이 심사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답을 찾아가는 데 효율적이다. USPTO에서 오바마 정부들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심사관과의 인터뷰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심사관들에게 M-T 테스트가 어떻게, 왜 충족되는 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게 되면 심사관들이 거절의견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사관과의 인터뷰는 Bilski 유형의 발명출원건에 대한 심사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sup>55)</sup>

52) In re Bilski, 545 F.3d at 7(Benson, 409 U.S., at 70 인용)

53) Ex parte Halligan, App. 2008-1588(BPAI Nov. 24, 2008)

### 3. 등록 후 관리 방법

#### 가. 특허무효 주장 당사자 측

특허가 허여되고 나면 그 권리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 되기 때문에 권리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된다. 현재 유효하게 존속되는 특허가 Bilski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 심사되어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Bilski 판결에 따른 특허유무효에 관한 분쟁시 M-T 테스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State Street 케이스의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테스트에 따라 등록된 방법발명의 청구항도 M-T 테스트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Bilski 판결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의 운명에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서 살펴본 연방지법원의 판결이 시사하듯이 (영업)방법의 특허유효성을 주장하고 피고의 101조 방어주장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sup>56)</sup> 피고는 101조의 요건충족에 관해 M-T 테스트를 적용하여 특허무효를 다룰 수 있고, 방법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당사자는 무효확인소송(declaratory judgement)을 제기하여 M-T 테스트에 의한 무효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나. 특허권리자 측

등록 특허의 무효 주장과 항변에 대응한 특허권자의 대응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방법 청구항이 무효라고 판단이 될 경우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몇가지 대안이 있다.<sup>57)</sup> 먼저 쟁점 특허가 장치 또는 시스템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특허권자는 이를 제외한 비방법 청구항(non-process claims)만을 행사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측이 Bilski에 근거하여 특허무효항변을 하는 것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특허가 오직 방법 청구항만을 가지고 있고 아직 심사결정이 나지 않은 계속출원, 분할 출원 등 관련된 출원이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Bilski 기준에 맞추어 청구항을 수정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쟁점 특허에 비방법청구항이 하나도 없고 관련된 출원이 특허청에 1건도 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허의 유효를 유지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등록 후 특허청구항 또는 명세서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재심사제도<sup>58)</sup>와 재발급제도(reissue)<sup>59)</sup>가 있다.

등록 후 권리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재심사(reexamination)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특허권자에게 열려 있으나 재심사는 특허성에 관한 실질적인 법적 이슈를 제기하는 간행물에 의한 선행기술에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101조 특허요건을 이슈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발급을 위한 출원은 101조 사항이라도 기만적인 의도가 없이 출원서와 명세서, 청구항 등의 유효성 또는 권리효력의 범위를 유발하는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방법특허의 무효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가능할 것이다.

다만, 재발급 출원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특허등록 시점으로부터 2년후 청구항 범위를 넓히는 재발급 출원과 원 특허 심사절차 중 포기한 발명요소(subject matter)를 되찾기 위한 재발급 출원은 금지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발급 출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발급제도는 Bilski 기준에 맞추어 방법 특허의 청구항을 치료하는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VI. 결론

101조에 의한 방법발명의 특허 적격성 판단기준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 다양한 잣대를 만들어 오고, 특허법상 발명의 대상과 폭을 결정지어왔다. 초기에는 101조 방법특허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적용하는 소극적, 부정적 방향에서 접근해온 것을 이에 대한 일관된 적용이 어렵게 되자 무엇이 특허가능한 방법 발명을 구성하는 지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판단기준을 진화시켜 왔다. State Street와 AT&T 판결 이후 BM특허는 붓물처럼 늘어났다. 2000년대 금융시장의 활황에 따른 펀드 투자의 금융기법의 양산과 맞물려 소프

54) Mainak H. Mehta, Esq.(Sughrue Mion PLLC) et al, Patent Prosecution and Enforcement Tips in view of In re Bilski,

55) USPTO는 오바마정부 들어 심사체제해소를 해소하기 위해 FA 기간 단축과 재심사청구(RCE)를 줄이는 데 심사정책의 초점을 두고 심사관 주도 또는 출원인 신청에 의한 심사초기단계의 인터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David Kappos 특허상표청장 블로그 참조.(www.uspto.gov/blog/)

56) 전계 53, Mainak Note 참고.

57) 전계 53, Mainak Note 참고.

58) 35 U.S.C. § 301

59) 35 U.S.C. § 251

트웨어와 BM 특허는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 이번 Bilski 판결은 그동안 특허대상이 시장주도로 진화해오던 것을 잠시 멈추고 혁신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공과 독점적 재산권 인정간의 균형점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Bilski 케이스 판결이 초래하는 여파를 고려하여 CAFC는 Bilski 케이스를 심리 판결하기 전에 101조의 방법발명의 요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산업계와 특허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섯가지 질문사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amicus brief(법정친구의견)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sup>60)</sup> 로펌, 대학, 산업협회 등 41개 기관, 단체로부터 Amicus Brief가 제출되었고, 이번 Bilski 결정에는 이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질문이 함축하고 있듯이 새 기준은 기존 State Street 이후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온 방법 발명의 특허자격 요건을 한 단계 강화하였다.

USPTO가 Bilski 테스트의 일관되고 엄격한 적용을 위해 임시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방법원들도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M-T 테스트를 적용하여 무효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Bilski 케이스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지만 제1차 심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쟁점 특허자체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고, 방법 아이디어에 관한 특허에 대해 대다수 판사들이 보수적인 견해를 시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CAFC가 확립한 Bilski의 법리는 수정이 되더라도 최소한 물리적인 변환 또는 기계의 구현이 수반되지 않는 순전한 정신적 작용에 불과한 방법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대우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up>61)</sup> 지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방법(process) 특허를 효율적으로 창출하고 확보된 특허의 가치를 극대화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및 관리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설명한 출원 및 소송 대응 전략을 재검토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내에서 벌써 출원 및 소송 실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Bilski 기준의 CAFC 및 하급심 적용 추세와 동 케이스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영업방법 특허제도의 정착 및 운영에 영향을 준 미국 특허제도의 변화는 국내의 관련 심사제 및 소송실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발명진흥회**

#### 권 규 우

주미한국대사관 특허관  
특허청 상표심사관, 디자인심사과장, 국제협력과장,  
장외혁신담당관, 기획재정과장 역임  
WIPO Consultant, 한남대 겸임교수로 활동 경력  
미국 워싱턴법대(St.Louis) 법학석사(LL.M), 박사학위(JSD) 취득

60) Alexander Esslinger,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Conseils En Propriete Industrielle(FICPI), Commission Detudes Et De Travail (CET), Upcoming En Banc CAFC decision on Business Methods: "In Re Bilski", CET Working Document (2008.3.28): (i) Bilski의 쟁점 특허 청구항 1은 특허법 101조의 SM 자격이 있는가? (ii) 어떤 방법이 101조의 SM 자격이 있는 지를 결정하는 주 판단기준은?: (iii) 청구된 방법발명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정신적인 방법을 구성하기 때문에 특허자격이 없는 것인지?: 정신적인 단계와 물리적인 단계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특허청구항이 특허자격이 있는 SM을 성립시키는 시점은 언제인가?:(iv) 어떤 method or process(방법)이 101조의 특허자격이 있는 SM으로 성립되기 위해 물리적인 변환(transformation) 또는 기계연결(machine-tied)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v)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 vs.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와 ATT Corp. vs Excel Communications Inc.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렇다면 이 케이스들은 어떤 관점에서 반복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61) M-T 기준을 지지하는 쪽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State Street 이후 과거 10년간 등록된 방법특허, 특히 BM 특허의 상당수는 권리효력의 무효주장으로부터 상당한 위함을 받을 것이다. Tony Zeuli & Scott Oslick, BUSINESS UNUSUAL: WHAT'S NEEDED TO OWN A BUSINESS METHOD?, 66-NOV Bench & B. Minn. 27, (2009.11).

## 최초의 발명가 및 기업특허관리 성공사례집

‘외길 집념의 승리-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  
1983년 10월 19일, 한국발명특허협회(현 한국발명진흥회)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제작되었으며, 필자는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왕연중 씨, 40일 만에 35명의 발명가와 20개 기업을 취재하여 글을 써야하는 큰 작업이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에 실렸다면 그렇게도 기뻐했던 35명의 발명가들.

강태욱 · 권필현 · 김기태 · 김종길 · 박경재 · 박노양 · 박명구 · 박문갑 · 박영미 · 박창규 · 백희수 · 변상복 · 송기 · 송기택 · 신석균 · 심승택 · 안병렬 · 오기택 · 오상세 · 오형극 · 우원명 · 유남진 · 유병언 · 유종근 · 윤유택 · 이문희 · 이범천 · 이행용 · 임두환 · 진원호 · 최동식 · 최이순 · 최해용 · 홍성모(그...순), 그리고 금성사(지금의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20개 기업.

당시 신문 · 잡지 · 방송 등 언론도 앞 다투어 보도했고, 필자 왕 씨가 발명저술인으로 입문한 책이었다.

어느덧 35명의 발명가 중 몇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몇 분은 금탑산업훈장 등 훈 · 포장을, 나머지 분들도 대통령 표창 등 크고 작은 표창을 받았다. 모두 크게 성공하신 것이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1983년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취재차 찾아간 나에게 시원한 냉커피를 주시며 격려해 주시던 그분들이 오늘따라 많이 보고 싶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도 빕니다.” 자리를 함께한 필자 왕 씨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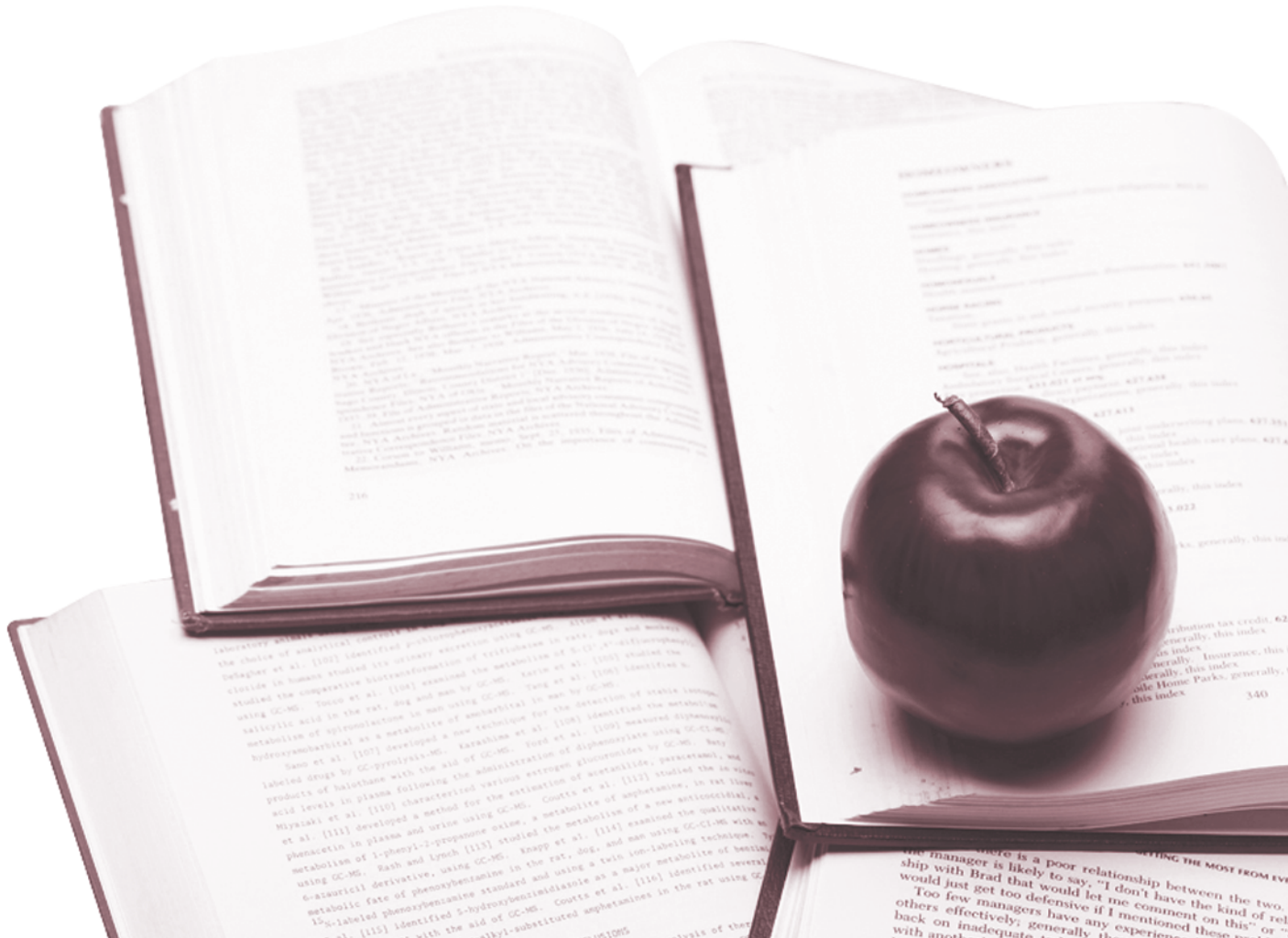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편집자 주

자료제공 :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

# C olumn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해피 CEO  
특히 Q&A, 포커스



#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여성발명품박람회

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Exposition 2010



## 2010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성공과 여성발명의 힘

지난 5월 발명의 달 첫 행사로 개최된 「2010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34개국, 5백여 명의 여성발명인이 참석해, 세계 발명계에서 확실히 인정받는 국제 발명대회로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는 세계 여성발명·기업인의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여성발명품의 홍보, 전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발명대회이나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는 어떠한 국제 발명대회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세계 최대의 여성발명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대한민국 여성발명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큰 의미로 다가온다. 불과 3년이라



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이렇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여성발명인들의 간절한 소망과 관심, 뜨거운 열의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할 때만 해도 이 대회가 매년 열릴 수 있을까라고 반신반의 했다. 하지만 28개국에서 3백여 명의 여성발명가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고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가 발족함으로써 세계 발명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는 멋진 출발을 했다.

그리고 2009년, 경제 불황과 신종 플루의 여파로 대표단 초청이 난항을 겪고 기업, 기관들의 협찬은 취소되었다. 하지만 여성발명인의 단결과 노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여성발명기업인워크숍의 시작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냈다.

그리고 올해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등 중동 지역에서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고, 몽골, 태국, 이란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기업, 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대표단이 입국하는 등 대회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와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세계 여성발명인들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출발점

2010년 행사는 크게 출품된 여성발명품을 심사·시상하는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KIWIE)」, 국내외의 우수 여성발명품을 전시, 홍보하는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여성의 창의성과 미래 시장’이란 주제로 열린 「세계여성발명포럼」, 여성·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프로그램인 「세계여성발명·기업인 워크숍」 등 4개 행사로 구성되었으며 약 7만 5천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큰 성황을 이뤘다.

지난 5월 6일(목)부터 9일(일)까지 서울 코엑스 홀A에서 개최한 「2010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Exposition : KIWIE2010)」에는 전 세계 여성발명인들의 3백여 점의 발명품이 출품, 아이디어를 겨뤘다. 함께 개최된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에도 120여 개의 여성발명기업의 우수 여성발명품과 아이디어 상품이 전시되었다.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KIWIE)」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이 대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세계 여성발명기업인들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 세계 여성발명기업인들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여성발명품의 홍보 및 전시를 통해 실질적인 판로개척 및 비즈니스 매칭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도 그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회를 통해 21세기의 지식재산경제시대에서 여성발명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받거나 발명 잠재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성장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여성들의 공동체이자 네트워크로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가 만들어졌다.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는 앞으로 여성발명 제품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전 세계 여성발명인, 기업인 간의 상호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 활동 범위를 넓히고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성장의 시너지를 만들어 갈 것이다.

**대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랑프리 수상**

2010 세계여성발명대회의 영예의 대상은 손계아(락시스)의 'DIY 레버락' 에게 돌아가 우리나라가 대회 3회째를 맞아 처음으로 그랑프리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

대상을 수상한 'DIY 레버락' 은 철문으로 된 현관문뿐 아니라, 나무로 된 방문이나 샴시 등에도 드라이버 하나로 자가 설치가 가능한 신개념 DIY 디지털 도어락이다. 기존 도어락과는 달리 전원 없이도 잠겨, 건전지 소모량이 70% 절감되며 기존 문의 훼손 없이 문고리만 빼고 그 자리에 쉽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 DIY 시장을 겨냥한 수출주도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락시스 도어락>

우수상(키위상) 국내 수상자로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신축 발열사를 이용해 기존의 침대 매트리스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발열이 되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전병옥(실버레이)의 '신축되는 침대용 발열 매트리스' 가 선정되었다. 신축 발열사란 전기를 통해 자체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첨단 신소재로, 섬유로 짜면 열을 내면서도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고 세탁도 가능해 활용도가 다양하다.

원적외선의 광선 온열을 이용하여 72시간 홍삼을 껍질째 달일 수 있고 시간, 온도 조절이 가능해, 정해진 시간만큼 달인 후에도 자동 보온 기능으로 넘어가 장기간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내용물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북명희(홍피직우리인삼)의 '원적외선 홍삼제조기' 역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특별상을 수상한 내국인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상에 사진이나 카드 엽서를 끼울 수 있으며, 펼쳐서 입체 구조물을 만들고, 식물을 심어서 재배할 수 있는 미니정원으로 변신하는 조영주(블루밍)의 '식물을 식재 가능한 입체박스'와 전기 제품의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장치로서 메인스위치로 조절할 수 있어 외출, 취침 시 한 번에 켜고 끌 수 있는 최성은(엔터메디)의 '통합형 대기 잔력 차단기', 청국장을 냄새가 나지 않게 가공해 땅콩버터처럼 빵에 발라 먹을 수 있게 만든 정정례(해누리)의 '청국장 버터'가 뽑혔다.

안동지역 특산물인 참마와 쌀을 원료로 안동 하회탈을 형상화한 윤명희(한국라이스텍)의 '안동 탈빵' 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기업인상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특허청장상에는 파주 특산물인 장단콩(검은콩/서리태)를 볶아 초콜릿을 입혀, 유해 독성 산소의 생산을 억제하고 노화 방지와 건강에 좋은 공지에(DMZ파주드림푸드)의 'DMZ파주장단콩초콜릿' 이, 디자인 부문에 주는 서울특별시장상에는 책상 가운데 회전판 안에 다양한 재료를 두고 8명의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김은(아루마루)의 '팔각회전책상' 이 각각 선정되었다.

기업 후원상으로는, 인체, 환경에 무해한 해초류로 만든 친환경 '음식쓰레기용 탈취제 고소탈' 로 윤옥연(오토윈)이 한화증권상을, 전통 한지에다 식물성 고분자 수지를 섞어,

100% 생분해되지만 강도는 일반 플라스틱 카드에 맞먹고 물에 젖지도 않는 김지수(한지이야기)의 '친환경 저탄소 한지카드'가 한국씨티은행상을 시상했다.

대회가 끝나고 실시한 참가업체 대상 심층 조사에 따르면 세계대회 참석이 각종 언론 매체에 소개되는 홍보 효과 뿐 아니라 제품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에도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을 탄 락시스의 도어락은 이 대회에서 대상을 탄 후 많은 방송, 신문 매체와 인터뷰, 보도된 것뿐만 아니라 무역, 유통업체, 대리점과의 상담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투자 여부도 논의 중이다.

또 실버레이의 발열 매트리스는 무역 업체와 역대 해외 수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흥피직 우리 인삼의 홍삼제조기 역시 여러 유통 업체와 국내외 판매에 대한 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

친환경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에코웍스는 대회 수상 실적을 바탕으로 "2010 브랜드 스타기업"과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동경전시회에 출품하고 일본 바이어들과도 계약을 협의 중에 있다.

알알이푸드는 국내 유수의 홈쇼핑업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에어락은 대만, 몽골 바이어들로부터, 아루마루는 교육 관련 업체 등에서 상담 및 납품 요청이 이어지는 등 참가 및 수상 업체들이 대회를 통해 유통과 판매의 물고리를 트는 사례가 많았다.

### 여성발명의 다채로움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는 여성발명인, 여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업체의 우수 발명특허제품, 아이디어 상품이 전시되었다. 2001년부터 열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여성기업 전시행사다.

전시장은 국내·외 우수한 여성 발명제품들을 심



사, 시상하는 발명대회 출품관, 여성기업인들의 발명품이 전시되는 박람회관, 국내외 발명관련 단체기관의 홍보관, 발명 문화 행사가 개최되는 이벤트관으로 구성되었다. 태국, 몽골, 폴란드, 대만, 시리아, 러시아 등 34개국에서 온 여성발명가들의 발명아이디어가 전시되었다. 지진 대비용 책상, 코코넛 열매껍질을 가공해 만든 가방, 바나나로 만든 국수, 시각장애인용 말하는 자, 무선핸드폰 충전기 등 여대생부터 연구소, 대학,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여성들의 다양한 발명품들이었다.



주차 공간임을 알려주는 소리 나는 주차 블록, 혼자서도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운동기구, 소염, 진통치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패치식 나노 바이오 의료기기, 청도지역의 감을 이용해 만든 천연 머리 염색제, 외부로부터의 공기 유입을 차단해 질 좋은 과실주를 만드는 안전발효용기, 물에 불리지 않고 바르고 문지르기만 해도 노폐물이 벗겨져 나오는 때 크림, 기존 스타킹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체 무해한 특수 실리콘을 도포한 밴드 스타킹 등 보기에도 신기하고 기능적인 아이디어 제품도 소개되었다.

또 오미자도토리고추장, 고농축 홍삼환, 생민들레 액상추출액, 참뽕양파김치, 기능성 호두파이, 즉석식 분말 고추장, 산머루 청국장환, 바나나식초, 화덕 재래김, 수삼을 잔뿌리까지 증기 건조시킨 원형홍피직 인삼 등 기능성 식품과 건강식품들도 맛볼 수 있었다.

행사장 뒤편에는 테디베어, 천연비누 만들기, 발명퀴즈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문화 공연이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에는 신기하고 특이한 발명품 뿐 아니라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 봤을 만한 생활 속에서 흔히 부딪히는 아이디어 제품들도 많이 소개된다. 여성발명의 영향력과 진가를 눈으로, 손으로 경험해 볼 수 있고, 발명아이디어가 우리 주변에 여기 저기 널려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자리였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발명을 느낄 수 있는 체험장이라 할 수 있다.

### 2010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 “여성의 창의성과 미래시장”

지난 5월 7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세계 여성발명인들의 상호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2010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이 ‘여성의 창의성과 미래시장’이란 주제로 열렸다.



‘특허 전쟁의 시대, 여성발명기업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서울대 경영대학 조동성 교수의 사회로 왕빈잉(Mrs. Wang Binying) WIPO 사무차장,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알리샤 아담작(Dr. Alicja Adamczak) 폴란드 특허청장이 발표했다.

‘녹색 성장과 여성발명’의 제2세션에서는 심영택 서울대 법과대학원 교수와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기획단 단장, 고영란 (주)에코웍스 대표이사가 최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 성장과 기업 발전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제3세션에서는 김영순 명지대 부총장이 사회를 맡아 ‘차세대 여성 지식재산인력의 양성방안’을 주제로 넘눗 송타나피타(Prof. Numyoot Songthanapitak) 태국 라자망갈라대 총장, 마하 바키엣 자키(Dr. Maha Bakhiet Zaki) 아랍국가연맹 IP팀장, 치암 루린(Ms. Chiam Lu Lin) 싱가포르 특허청사무차장이 발표자로 나와 각국의 여성 지식재산인력의 육성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Forum)은 지식재산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여성발명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지식재산발전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포럼은 세계 여성발명인들과 기업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 또는 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들을 공유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나라별 격차를 줄이고 발명의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여성발명기업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 실무와 체험 학습이 어우러진 국제 IP교육, 세계여성발명·기업인워크숍

지난 5월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이화여자대학교 ECC극장에서 전 세계 여성발명인 약 150명가량이 참석



한 가운데 「세계여성발명·기업인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IP파노라마」 중 6개 과정을 WIPO의 그리크발 자야(Mr. Guriqbal Singh) 중소기업국장과 라츠나 자야 푸리( Mrs. Rachna Singh Puri) IP컨설턴트, 라리사 쿠쉬너(Mrs. Larysa Kushner) 유럽인문대학(European Humanities University) 컨설턴트, 서울수 WIPO 과장이 강의했다.

이 외에 이종철 한성백제박물관 추진 단장의 ‘한국인의 정신문화’, 이영옥 진주셀 대표의 ‘한국의 전통 자개 제품 만들기’ 등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과 LG디스플레이 김주섭 IP센터장의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사례’, 오기영 충남대 겸임교수의 ‘여성 발명과 발상의 전환을 통한 틈새 시장 창출’, 조영주 블루밍 대표와 정정례 해누리 대표의 여성발명기업인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다. 또 강의와 함께 한국의 성공 기업체의 탐방 및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워크숍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인 IP 파노라마(IP Panorama)와 한국 여성발명 협회의 오래 여성발명교육 노하우를 접목해 실제 비즈니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중심의 사례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세계여성발명기업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는 우리 한국 여성의 힘으로 탄생시킨 발명계 최대의 세계여성축제다. 세계여성발명 대회는 발명을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보고 많은 여성들에게는 창조적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자리다.

지식재산시대인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패러다임 중 하나는 창조적인 여성발명인이다. 여성·창조·발명·경제력, 그리고 미래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뛰어난 재주와 창의력을 가진 여성들이 발명에 대한 참여와 노력을 더한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한 국가의 성장과 나아가 세계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이 대회와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가 계속 확대, 성장해야만 세계의 더 많은 여성들에게 발명을 전파해 경제력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전 인류가 발전해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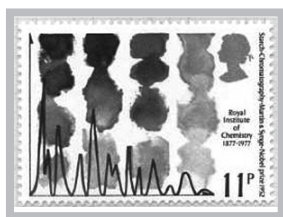
이제 여성 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부, 전 세계가 여성들에게 발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발명을 계기로 훌륭한 여성경제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민국발명진흥회**



**유 창 훈**  
현재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장  
전 상공부, 동력자원부, 산업자원부  
전 특허청 상표1과장, 특허심판원 심판관  
전 한국발명진흥회 관리본부장

##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마틴 [Martin, Archer] J(ohn) P(orter), 1910. 3. 1 ~ 2007. 7. 28]



영국의 생화학자 마틴은 1933년부터 영양연구소에서 비타민 E를 연구하였고, 1938년 양모공업연구소의 연구원, 1946년 부츠제약회사 생화학부장, 1948년 국립의학연구소 연구원, 1959년 에버츠베리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1941년에 R.L.M. 싱과 함께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창시하고, 이 분석법을 이용하여 아미노산들을 분리하였다. 이것은 물질이 섞이지 않는 두 액체에 분배되는 비율이 물질마다 다른 것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성분들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화학, 생물학 및 의학에서 중요한 분석법으로 쓰인다. 1944년에는 거름종이를 사용한 간단한 방식의 종이크로마토그래피를 발명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1952년에 싱과 함께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였다.

반트호프 [van't Hoff, Jacobus Henricus, 1852. 8. 30 ~ 1911. 3. 1]



네덜란드의 화학자 반트호프는 물리화학의 창시자이며 제1회 노벨화학상 수상자이다. 1876년 위트레흐트대학의 강사, 1877년 암스테르담대학 강사, 1878년 동 대학의 정교수가 되었으며, 18년 동안 재직하면서 물리화학적 연구에 몰두하여 반응속도론, 화학평형의 문제, 친화력(親和力) 문제 등에 처음으로 학문적 체계를 부여하였다. 또한 삼투압의 연구에 의하여 용액론(溶液論)을 수립하였다.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물리화학의 고전적인 분야는 거의 그와 오스트발트, 아레니우스 세 사람이 이루어 놓았다고 할 정도이다. 이 세 사람 가운데서도 그의 독창성에 의한 것이 많았다. 이들 세 사람은 같이 협력하여 《물리화학 잡지 Zeitschrift für physikalische Chemie》(1887)를 간행하였다. 1896년 베를린 과학아카데미 및 베를린대학 명예교수로서 독일에 초청되어, 슈타스푸르트 암염층(岩鹽層)을 상규칙적(常規則的)인 입장에서 연구하였다.

자료제공 화상 아프리카(<http://blog.daum.net/philook>)

## 향후 3년 내에 도로교통 시설물분야에서 국내 최고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폐차 타이어를 활용한 회전형 차량용 방호울타리 '세이프티 롤러' 최초 특허출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도심 미관과 환경 친화를 고려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주)금성산업 채종술 대표이사를 만나보자



(주)금성산업 채종술 대표이사

지난 제45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세이프티 롤러」로 철  
탑 산업훈장을 수상하셨는데요, 발명하게 된 동기는 무엇  
인가요?

2004년도에 기존 금속판 가드레일의 단점에 착안하여 충격흡  
수를 극대화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차량파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폐차 타이어를 활용한 회전형 차량용 방호울타  
리 '세이프티 롤러'를 최초 특허출원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도심 미관과 환경친화를 고려한 제품을 개발하고 또 성능을  
개량하게 되었습니다.

「세이프티 롤러」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차량 충돌 시 회전력을 이용하여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시스템으  
로 탑승자의 안전과 차량의 손상을 최소화시켜주어 교통사고 사망  
률을 0%로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기존 가드레일의  
경우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충격흡수기능이 약하여 탑승자



의 안전에 취약하나 세이프티롤러의 원상복  
원력은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실물 차량으로  
테스트한 결과 완벽히 복원되는 것이 확인되  
었고, 타제품에 비해 충격흡수력 결과가 월등  
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금성산업의 중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주)금성산업의 제품 라인업을 모두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탈바꿈시켜 국내는 물론 해  
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며,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풍력, 재활용 소재 등을 활용  
한 지능형/감지형 교통시설물 개발을 위해 R&D부문에 집중 투자하여 교통시설물부문에서 최첨단 기  
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며, 향후 3년 내에 국내 도로교통 시설물분야에서 국내 최  
고기업으로 성장하고 해외시장의 지속적인 개척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  
품을 끊임없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 대표이사님의 경영비전은?

2010년 내수 200억, 수출 100억을 목표로 고부가제품의 판매에 주력할 예정이며, 연구개발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주)금성산업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내외 특허 28개, 실용신안 10개, 디자인등록 570여 개 등 총 600여 개가 넘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도로교통시설물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더욱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만이 치열한 도로교통시설물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하며, R&D 분야의 강화만이 (주)금성산업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CEO를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원대한 꿈을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한 분야에 성실하게 매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진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출원 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 디자인출원을 위해 반드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고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인을 선임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원,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 시에 출원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간위임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선임신고서를 해야만 출원에 대한 일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준용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

※ 특허청에서는 대전본청 고객센터와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에 민원상담관 및 특허고객콜센터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출원절차 등 특허행정분야에 관하여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도 상공회의 소내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출원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니, 향후 산업재산권 절차진행 등과 관련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방 소재 특허법률사무소 중 변리사회의 추천을 통하여 특허청지정 무료변리상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구축(2005. 4. 1일 업무개시)

- 고가의 변리서비스에 접근하기 곤란한 경제적 약자 및 개업변리사 수가 부족한 지역 거주자를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센터를 2005년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동센터에는 공익변리사 4명이 배치되어 선행기술검색, 출원서류작성지원 등 특허권 확보에서 특허분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민원상담관 연락처

- 대전 본청 : 042-481-5222(특허/실용신안), 5221(디자인/상표)  
- 서울사무소 : 02-568-8155(내선 320, 321, 326)

• 특허고객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44-8080

• 대한 변리사회 : 02-3486-3486, 인터넷 [www.kpaa.or.kr](http://www.kpaa.or.kr)

• 공 익 변 리 사 : 02-553-5861, 5863~4

# 지식재산권으로 히트상품을 만들어보자!



그림 1 - 에릭슈미트 구글 회장은 10년 만에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 우리가 알던 세상의 종말

TGIF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새로 나온 아이돌그룹의 그룹명도 아니고, 유명한 외식업체의 상호도 아니다. TGIF는 21세기 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보의 무한확장’을 가져온 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의 대문자 약어이다. 140글자로 제한된 문자로 전 세계인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트위터,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구글, 스마트폰 혁명을 가져온 아이폰, 열린세상의 디지털인맥 구축사이트 페이스북은 우리의 생활방식을 바꿔놓을 것이다. 뉴욕커 수석 칼럼니스트이자 ‘20세기 100명의 기자’로 뽑힌 켄 올레타는 구글, 애플을 선두로 한 변화의 트렌드 속에서 기업과 개인이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담은 책 ‘구글드’를 발간했고,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켄은 이 책에서 ‘우리가 알던 세상의 종말’을 외치고 있는데, 과연 그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TGIF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Google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자. 물론, 답은 구글의 지식재산권에 있다.

## 구글의 서비스

사실, TGIF를 모르더라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상관 없다. 하지만 ‘발명가’로서, 21세기를 흔들 ‘발명품’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TGIF가 가지고 있는 기술, 브랜드, 디자인과 그들의 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 www.google.com 은 '심플' 하다. 광고가 주 수익원인 이 회사의 성공전략은 메인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된다. 광고가 없어 보이지만 교묘하고 정교한 광고의 집합체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구글의 성공전략은 '생태계 생성의 성공'에 있다. 이 교수는 『구글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구글은 사람들이 원하는 웹사이트로 이동하여서 구매를 하는 경우 생기는 거래에 주목하였다. 사람들이 구글에서 찾은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다면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경우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서 자신들의 상품이 검색이 되는 것 으로부터의 광고효과를 노려 구글에게 값을 지불할 유인이 생긴다. 구글은 굳이 자신들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묶어 놓기 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여기서 구글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클릭 당 가격을 매김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글의 사업전략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검색 서비스 사용자들을 신속하게 목적으로 보내주는 전략이 매우 유효하였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고 이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상호 보완작용을 불러일으켰다.(2010.7.9 구글 성공 이끈 '생태계' 전략. 디지털 타임스』라고 구글의 성공전략을 분석하였다.

구글은 이러한 '구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색(구글), 이미지검색(PICASA), 무료브라우저(CROM) 배포, 학술검색(구글스콜라) 서비스, 도서검색, 디렉토리검색, 비디오검색(YOUTUBE), 지도 서비스(구글 어스), 메일 서비스(Gmail) 등을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고, 하나의 아이디(계정)로 수

십가지의 고급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세계 1위의 검색포털이 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구글의 지식재산권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구글이 제시할 '세계관'을 미리 파악하고, 구글이 제공하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멋진 '발명'을 기획해 보도록 하자.

### 구글의 브랜드 전략

구글은 국내에 약 60여 개의 상표를 출원하였다. 구글, 크롬, 안드로이드, 유튜브, 피카사, 놀, 블로거, 벡서스원과 같은 브랜드들이 구글의 소유가 되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구글은 1개의 상표 출원으로는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글은 자신의 브랜드를 충실히 보호받기 위한 각종 유사상표들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최근 국내 대기업도 많이 시도하는 출원전략인 다양한 유사상표출원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Google'의 경우, 글자체만 다른 경우라도 출원하여 자사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충실하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서비스의 경우 본래의 'youtube' 표장 이외에도 'utube' 등의 유사브랜드를 미리 출원하여 후발주자들의 상표침해행위를 조기에 방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구글의 브랜드전략은 구글이 제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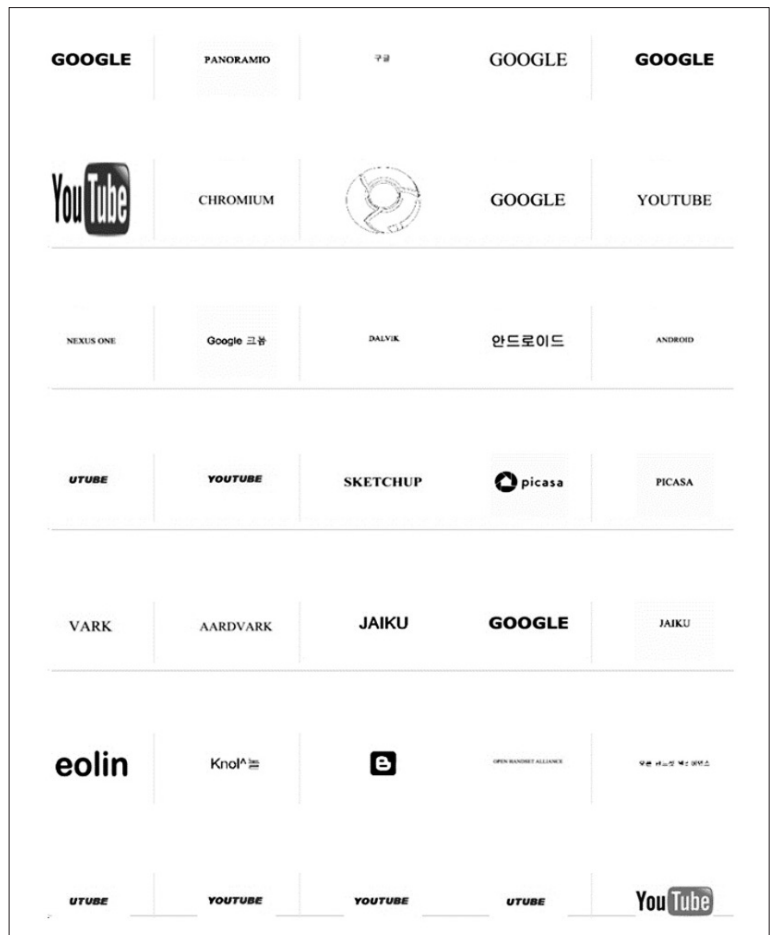


그림 3 - 구글의 상표등록출원 견본. 앞으로 구글에서 국내에 개시할 서비스들의 브랜드들도 미리 출원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구글의 디자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글의 UI를 좋아하지 않는다. 시각적으로 미려한 부분이라고는 찾기 어려우며, 직관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은 구글의 수많은 웹서비스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상당히 하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최적인 UI를 설계하고 이를 수많은 디자인출원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구글은 애플처럼 자신의 제품디자인을 소비자에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필수적이지 않았던’ 기능들을 소비자에게 어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드는 ‘길들이기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등록디자인 90-0455705

(12) **United States Design Patent** (10) Patent No.: **US D561,193 S**  
**O'Mullan et al.** (45) Date of Patent: **Feb. 5, 2008**

(54) **DISPLAY DEVICE SHOWING USER INTERFACE.** 6,388,682 B1 \* 5,2902 Kurtzberg et al. .... 715,764  
 0409,471 S \* 5,2904 Melanob. .... D14,485  
 D505,135 S \* 5,2905 Sapp et al. .... D14,489

(75) Inventors: **Beth Elynn O'Mullan**, Danville, CA 2003,0197724 A1 \* 16,2903 Reed ..... 345,938  
 (US); **Michael Lopez**, San Ramon, CA 2004,0199033 A1 \* 6,2904 Venocenti et al. .... 345,963  
 (US) 2004,0189724 A1 \* 9,2904 Golbroski et al. .... 345,964  
 2005,0006666 A1 \* 3,2905 Hoshino et al. .... 715,811  
 2005,0081164 A1 \* 4,2905 Hams et al. .... 715,830

(73) Assignee: **Google Inc.**, Mountain View, CA (US)

(\*\*) Term: **14 Years** \* cited by examiner  
 Primary Examiner—Robin V. Webster  
 Assistant Examiner—Karen E. Kearney  
 (74) Attorney, Agent, or Firm—Fish & Richardson PC.

(21) Appl. No.: **29/260,539**  
 (22) Filed: **May 26, 2006**

(51) **LOC (8) CL.** ..... **14-04**  
 (52) **U.S. CL.** ..... **D14489, D14487**  
 (58) **Field of Classification Search** ..... **D14485-95;**  
**D1824-33; D198; D2011, 23; 715,700-867;**  
**715,973-7**  
 See application file for complete search history.

(56) **References Cited**  
**U.S. PATENT DOCUMENTS**  
 D76,445 S \* 9,1928 Yoon ..... D10,126  
 D260,660 S \* 9,1981 Mayer ..... D21,324  
 5,388,197 A \* 2,1995 Rayne ..... 715,723  
 D296,455 S \* 7,1998 Blair ..... D14,489  
 6,208,335 B1 \* 3,2091 Gordon et al. .... 715,721

(57) **CLAIM**  
 The ornamental design for a display device showing user interface, as shown and described.

**DESCRIPTION**  
 FIG. 1 is a front view of a display device showing user interface showing our new design.  
 The broken lines showing of the display device and elements of the user interface are included for the purpose of illustrating environmental structure and form no part of the claimed design.

**1 Claim, 1 Drawing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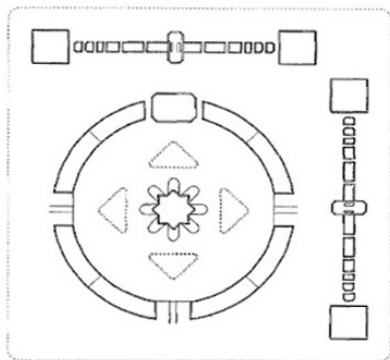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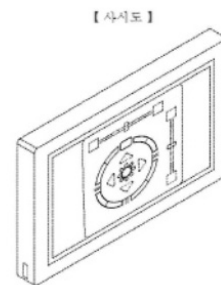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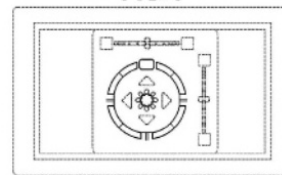


그림 4 - 구글이 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받은 D 561,193 S 디자인



【 사시도 】



【 평면도 】



【 측면도 】

그림 5 - 한국에서 등록된 등록디자인 제30-2006-0046746호 출원. 2011년 회제를 모을 구글 TV의 UI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구글의 검색기술

구글이 국내에 ‘검색기술’과 관련하여 출원한 특허는 무려 160개가 넘는다. 이러한 IT서비스 분야의 경우 눈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IT서비스’의 특허출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구글은 회사 자체의 모토가 ‘공개를 통한 발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프레임워크의 지배’를 위한 출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글의 검색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출원이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자.

구글의 검색이 가장 인정받는 부분은 ‘검색의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엄청난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특정한 단어를 칠 경우 일정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최초의 인터넷 검색엔진들의 로직이었다면, 구

글의 검색은 다르다. 미국에서 2004년 12월에 출원된 미국출원 제11/002,474호를 기초로 우선권주장하여 PCT출원으로 국내에 들어온 공개특허 제10-2007-0007150호를 살펴보자. 이 출원은 '서치 엔진에서의 서치 결과의 다양한 개인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요약하자면 '검색결과를 개인별로 다르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A라는 사람이 '사과'를 입력했을 때의 결과와 B라는 사람이 '사과'를 입력했을 때의 결과를 다르게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별'이 결국 검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공개특허 제10-2007-0007150호의 청구항은 총 36항으로 되어있으며, 청구항 1항은 '사용자의 서치 쿼리에 관련된 문서 세트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관심 프로파일에 따라 상기 문서 세트의 제1순위 및 상기 관심 프로파일의 상기 순위에 대한 영향도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순위화된 문서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치 쿼리의 결과를 사용자에게 개인화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을 주장하여, 등록 시 사용자의 프로파일과 사용자의 관심 프로파일의 순위를 검색결과에 반영하는 검색방법은 모두 구글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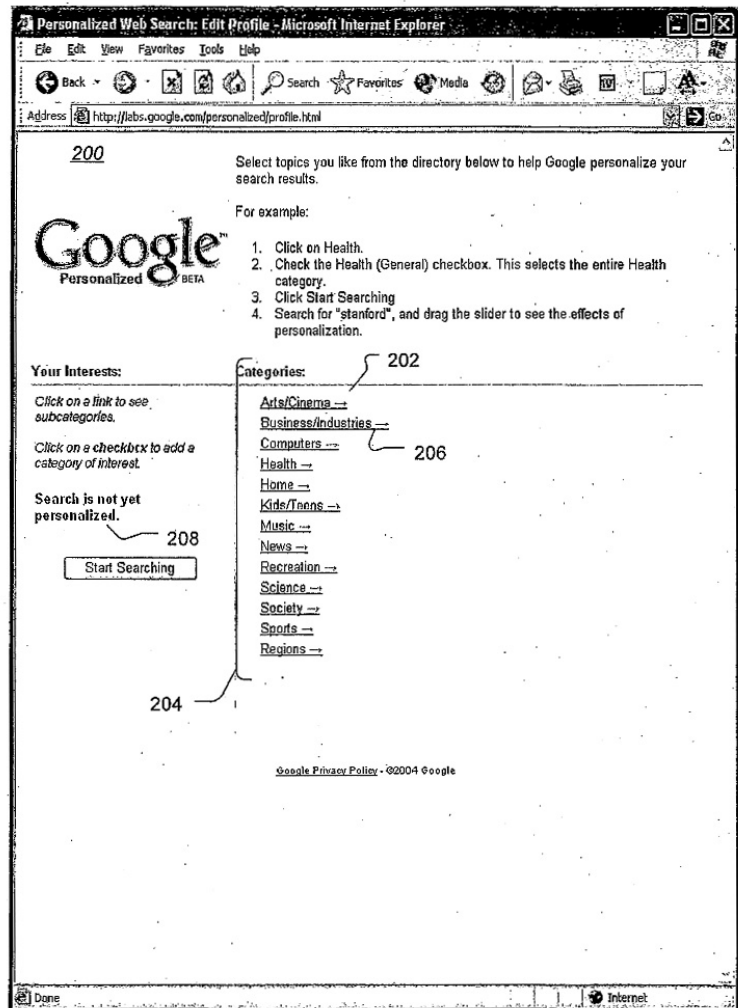


그림 6 - 공개특허 제10-2007-0007150호에서 주장한 "서치 엔진에서의 서치 결과의 다양한 개인화 기술"

구글은 이밖에도 문서 구조에 기초한 검색 결과의 표시(특허출원 제10-2007-7009771호), 지리적 관련성에 따른 문서 색인화(특허출원 제10-2007-7017523호), 검색 결과를 클러스터화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특허출원 제10-2006-7005695호), 회사 목록 검색에서의 검색 질의의 범주화 방법 및 장치(특허출원 제10-2006-7005695호), 단일 질의에 대한 다수의 검색 결과 세트들을 표시하는 시스템 및 방법(특허출원 제10-2006-7002986호) 등 검색분야에 대한 다수의 핵심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20년간 막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구글의 광고기술



그림 7 - 갤럭시S 출시행사에 참석한 앤디 루빈 구글 부사장

이중 비교적 최근에 공개된 특허출원 제10-2009-7025087호의 ‘사용자 관심을 추론하기’를 살펴보면, 해당 출원은 미국에서 2007년에 출원된 11/742,995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하면서 국제출원된 국제출원 PCT/US2008/062263의 국내진입 특허출원이다. 전체 청구항 수는 총 42항으로, 구글에서 적절한 사용자의 관심을 추출하여 정확한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담고 있다.

“구글은 서비스회사다.” 얼마전 갤럭시S의 제품발표회에 참석한 앤디 루빈 구글 부사장은 구글의 회사정체에 대해서 위와 같이 말했다. 결국, 구글은 ‘서비스’ 회사이며 그러한 ‘서비스’의 목표는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은 자사의 월등한 서비스 개발력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무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료 서비스’의 수익창출원은 많은 수요자들을 이용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80여 개가 넘는 출원을 하였으며, 이중 대다수는 등록되었다.

대표적인 구글의 광고기술 관련 특허는 특허출원 제10-2006-7015511호 광고에 대한 타겟팅 기준을 제시 및 또는 제공, 특허출원 제10-2006-7022108호 온라인-사용자 지원 웹-기반으로 한 광고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 특허출원 제10-2007-7025247호 사용자의 웹 히스토리를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특허출원 제10-2008-7001633호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 광고 공간 할당 방법, 특허출원 제10-2008-7018816호 추정된 광고 품질을 사용한 광고의 필터링, 순위부여 및 장려, 특허출원 제10-2008-7023104호 타겟화된 모바일 광고, 특허출원 제10-2008-7024188호 광고 시스템에서 위치 정보 결정 및 또는 사용, 특허출원 제10-2008-7026699호 타겟화된 광고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정보 생성, 특허출원 제10-2009-7025087호 사용자 관심을 추론하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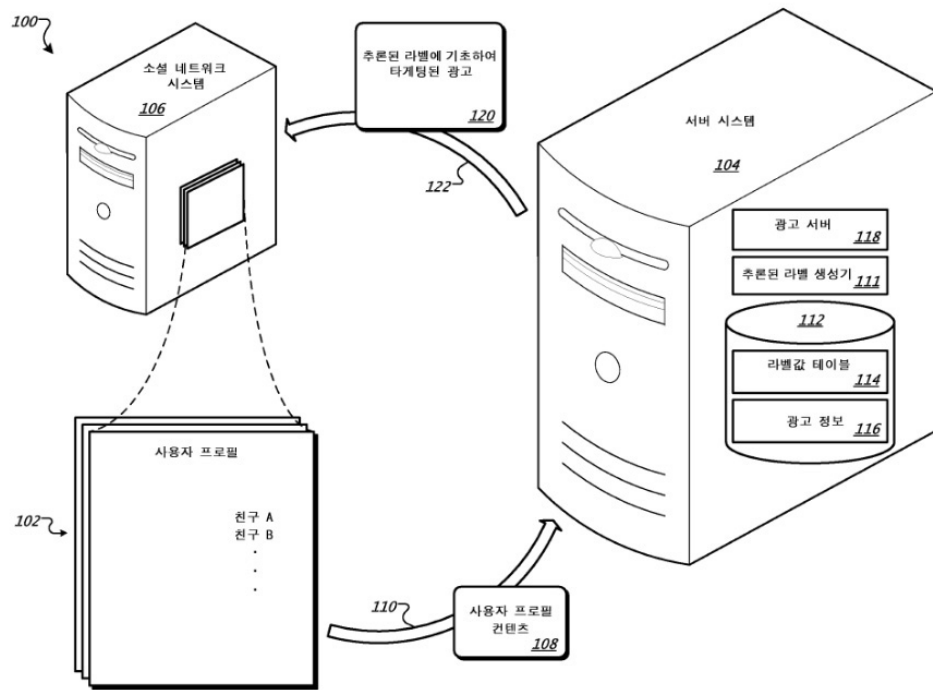


그림 8 - 특허출원 제10-2009-7025087호의 '사용자 관심을 추론하기' 대표도

대표청구항인 청구항1에는 『사용자의 히스토리 활동(historical activity)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자의 히스토리 활동의 일부분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일부분으로부터 제1세션과 제2세션을 식별하는 단계; 각각의 상기 세션들에 대해, 하나 이상의 그룹핑들(groupings)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제1세션의 식별된 그룹핑과 상기 제2세션의 식별된 그룹핑을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용자의 히스토리 활동 분석 방법』이 기재되어, 권리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본 출원의 상세한 설명에는 『소셜 네트워크는 그 소셜 네트워크의 사용자에게 의하여 생성된 사용자 정보를 호스트할 수 있다. 예컨대, 도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자는 프로필(102)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관심, 이야기, 사실, 혹은 사용자에게 관한 묘사를 포함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와의 사회적인(Social, 소셜) 관계를 지정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친구”인 다른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다. 도 1의 서버 시스템(104)과 같은 광고 시스템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프로필을 열람하는 사람에게 온라인 광고(Advertisements, Ads)를 타게팅(Targeting)할 수 있다. 특정한 구현에 의 경우, 광고 시스템은 프로필의 내용에 기초하여 온라인 광고를 생성한다. 일부의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프로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전혀 못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프로필에 대하여 정확하게 타게팅되는 온라인 광고를 생성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제1사용자의 프로필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그 제 1 사용자와 관련된 다른 사용자들의 프로필을 사용하여 제1사용자의 프로필과 함께 디스플레이할 온라인 광고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1 사용자인 Isaac은 Jacob과 Esau 2명의 친구를 가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프로필에 아무런 정보

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본 서버 시스템(104)은 Isaac의 프로필에 대한 정보를 추론하기 위하여 Jacob과 Esau의 프로필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추론된 정보는 Isaac의 프로필이 열람될 때 표시되는 온라인 광고를 생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대한 프로필은 광고주가 자신의 캠페인을 타게팅하기 위해 사용하는 키워드에 대응하지 않는 용어나 구어(Colloquialism)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용어나 구어는 해당 용어나 구어(집합적으로 비광고 키워드라고 지칭함)와 키워드 간의 관계를 추론함으로써 광고주에 의해 사용되는 키워드에 매핑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본적인 논리하에 각종 스코어 및 파생 데이터를 생성시켜 사용자 간에 주고 받는 ‘쪽지/메일/답글/게시물’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관심사를 추정해낸다.

### 마치며

이밖에도 각종 지리정보 데이터를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제공하는 구글맵과 이를 활용한 각종 지도서비스, 동영상 검색기술을 기초로 소셜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YOUTUBE 서비스,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많은 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한 놀 서비스 등 구글의 ‘서비스’는 인간 생활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그 확장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종말’이라는 말에서 ‘종말’이 수식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이다. 결국,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확장을 불러온 ‘결절(Node)’은 TGIF로 약칭되는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한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앞선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기만 해도, 멋진 발명을 탄생시킬 수 있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발명가로서 ‘우물’ 속을 빠져나올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구글을 위시한 TGIF라고 할 수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엄 정 한** 변리사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유미특허법인, 특허법인 엔트리  
 서울대, 공주대, 경상대, 강원대  
 지식재산권 특강  
 저서 : 특허법 에센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국가가 인증하는 믿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무엇인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제2조제1항 제3호의2 및 제3조의2)

종전에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장은 산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6조제3항)

※ 참고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상표법 제3조의2)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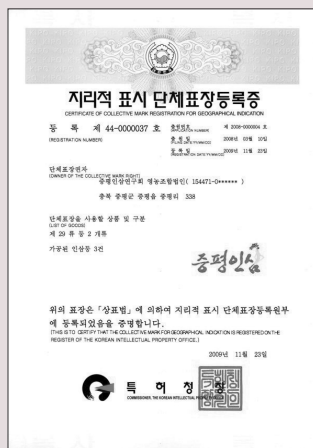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한산모시”, “보성녹차”, “순창고추장”처럼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명 지역특산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표시 하는 지리적 명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정 품질이나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 참고 : 지리적 표시의 정의(상표법 제2조제1항 제3호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대표적인 외국의 지리적 표시**

외국의 지리적 표시로는 Medoc(포도주, 프랑스), DARJEELING(차, 인도), Roquefort (치즈, 프랑스), Tequila(증류주, 멕시코), Jaffa(오렌지, 영국) 등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이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제2조제1항제3호)으로서, 단체 표장은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며, 단체의 신용에 의하여 거래자, 수요자에 대하여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고 고객 흡인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품질 보증적 기능이 강하며, 또 단체표장은 정관에 당해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의 범위, 사용조건, 사용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표시단체 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 강원도

Wonju



# 원주 옷

원주 옷칠은 높은 강도와 우수한 광택, 좋은 색깔과 향기 등으로 상품화의 최적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생활도구나 식기에 옷칠하면 살균력이 강하고 썩이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며 인체에 무해합니다.



| 상표명 |  
원주옷

| 권리자 |  
원주옷 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38호

| 상품분류 |  
제 2류 : 니스용옷, 생칠옷, 정제옷, 흑생옷

연락처  
원주옷 영농조합법인  
033-732-5726



### 01

#### • 유래

원주에서 옷나무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는 조선 총독부에서 옷나무 증식 10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수한 옷칠이 생산되는 원주군에 옷나무 시험지를 설치하고 조선 산림회 주체로 옷칠 강습회를 열기도 하는 등 원주옷은 전국 최대, 최고의 옷나무 재배지였으며, 1960년대에는 원주칠 정제 연구소가 우리나라 최초로 운영되었으며, 고 일사 김봉룡(인간문화재 제 10호 나전칠기장)선생은 나전칠기로 양유전 선생은 칠화 칠기로 전통 칠기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02

#### • 특성

옷산의 농도는 옷칠의 품질을 좌우한다고 알려졌는데 옷산의 농도가 짙으면 칠을 할 경우 도막이 두껍게 생기고 투명성이나 광도가 좋아서 옷칠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조차 한국산 옷액을 최고로 칩니다. 1939년에 시행한 성분분석 결과를 보면 원주산 중급 옷칠의 경우 옷칠의 품질을 좌우하는 옷산 함량이 72.5%로 다른 지역의 옷칠에 비해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고 일본에서 꾸준히 원주옷을 수입해 간 것은 이러한 원주옷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원주옷은 그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원주옷칠공/민예품은 원주에 거주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이형만 선생을 비롯하여 다수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이 작업하여 전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03

#### • 옷의 활용도

- 옷 공예품 : 옷칠기세트, 옷칠도마, 옷칠쟁반, 옷칠칠화차잔, 옷칠칠화차상, 옷칠차상, 옷칠주전자, 옷칠냉면기, 옷칠주발, 옷칠차반, 옷칠머그컵 세트, 옷칠과반
- 식용 : 옷닭, 옷차, 옷삼겹살, 옷족발, 보쌈류, 옷소 등의 식품류, 옷술, 옷물 등의 음료제품

# 강원도

Anheung



## 안흥찐빵

안흥찐빵은 100% 국내산 팔소가 성겨 씹히는 맛이 있고 설탕을 적게 넣어 팔의 단백함을 느낄 수 있으며 **안흥찐빵만의 독특한 생산방식으로 폭신하면서 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



| 상표명 | 안흥찐빵

| 권리자 | 농업회사법인 안흥명품합명회사

| 등록번호 | 제 55호

| 상품분류 | 제 30류 찐빵

연락처  
농업회사법인 안흥명품합명회사  
033-340-2603

01

### • 유래

찐빵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시대에 찐빵으로 먹을거리를 해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경제가 성장하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찐빵은 자취를 감추었고,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1995년 '진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찐빵 맛'으로 보도되면서, 70년대 이전 세대들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가 안흥찐빵에 대한 인기로 이어지게 되었고 덕분에 1995년까지 1개였던 안흥찐빵 업소는 현재 19개로 늘어났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개최해 온 안흥찐빵축제로 역사적 명성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02

### • 특성

안흥찐빵은 다른 찐빵에 비해 팔소가 성겨 씹히는 맛이 있고, 설탕을 적게 첨가하여 팔 고유의 단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흥찐빵은 최고급 중력 밀가루를 사용하고, 다년간의 제조 노하우가 쌓여 다른 지역에서 제조하는 찐빵보다 부드러우면서 쫄득거립니다. 기계로 모양을 성형하면 반죽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어 빵의 질감이 질겨지는데 안흥찐빵은 전통적인 수작업으로 성형하여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맛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03

### • 지리적 특성

안흥면은 조선시대부터 안흥역이 설치돼 있던 곳으로 역관, 역촌으로 불리기도 하였을 정도로 서울~강릉 간의 중간 기착지 점이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안흥면의 위치는 서울에서 4시간, 강릉에서 4시간 거리로 서울 또는 강릉에서 출발한 여행객들이 점심을 해결해야 했으므로 예전부터 식당이 번성하였는데, 먹을거리가 흔치 않던 시절에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찐빵은 좋은 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임야를 제외하면 밭이 대부분인 농경지에서 손쉽게 재배할 수 있었던 팔은 찐빵의 좋은 재료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안흥



지리적표시단체 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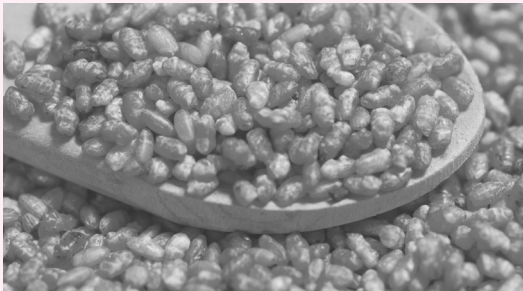
## 강원도

Chuncheon



# 춘천막국수

강원도 춘천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막국수는 메밀의 겉껍질만 벗겨 낸  
거친 메밀가루로 굵게 뽑아 만든  
거무스름한 빛깔의 국수로 메밀  
막국수라고도 합니다.



| 상표명 |  
춘천막국수

| 권리자 |  
춘천향토막국수협의회 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32호

| 상품분류 |  
제 30류 국수(춘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막국수용 국수에 한함),  
식용메밀가루(춘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막국수용 메밀가루에 한함)

연락처  
춘천향토막국수협의회 영농조합법인  
033-261-3618



01

### • 유래

19 세기말 춘천지역의 의병의 발원지 중 하나였으며, 의병들은 일본군을 피해 가족과 함께 깊은 산에 들어가 화전을 일구어 조, 메밀, 콩 등으로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 후에도 이들은 하산하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고 살게 되었다는데, 그들이 짓던 메밀을 읍내에 내려 오면서 춘천에 막국수가 자리를 잡았다고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으며 그러던 것이 6.25 직후 생활고의 해결을 위해 동네 여거저기서 국수를 만들어 장사하게 된 것이 막국수 대중화의 시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

### • 특성

막국수가 춘천의 대표적 음식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는 이유는 춘천이 소양강을 끼고 영서 북부지방의 문명중심지인 점과 우리나라 제1의 메밀생산지인 강원도 메밀제분의 중심지가 춘천이었기 때문에 영서 북부지방 중 춘천이 서울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춘천의 풍물이야기가 널리 퍼져 나갔을 것으로 봅니다. 막국수의 주 원료인 메밀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 B1 · B2, 니코틴산 등을 함유하여 영양가와 밥맛이 좋습니다.



# 발명 365

## 종이쇼핑백

**미** 국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다. 어머니는 매일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모친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가슴 아파했다.

어느 날, 소년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종이 쪽지로 가방을 접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 쇼핑백' 이 만들어 졌다. 편리하고 가벼운 종이 쇼핑백은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소년의 가족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 때가 1887년이다. 이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틸웰이다. 그는 '종이 쇼핑백' 의 발명가로 기록되어 있다.

어머니를 돕겠다는 순진한 마음으로 만든 상품 하나가 소년의 가정에 풍요를 안겨준 것이다. 부모님을 향한 효심은 하늘을 움직이고, 장수(長壽)와 풍요의 복을 받게 된다.



---

# 치과는 왜 안 아플 때 가야 할까요?

---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미리 막는 것이 좋다는 뜻인데요, 이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곳 중 하나가 치과입니다.

제 주변에도 입 안에 차 한 대 넣고 다니신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10여 개 빼고 보철을 해 놓게 되면 견적이 많게는 2,000만 원 이상도 나오는 걸 고려하면,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노인분들(65-74세)이 일생동안 뽑은 자연치아 개수가 평균 12개 내외(보건복지부, 2006년)인 것을 고려하면, 입안에 차 한 대 넣고 다니신다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결코 드문 사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과에서 국민들이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2005년에 이미 4조 원에 달한 바 있고, 최근에는 거의 6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막대한 비용과 건강악화를 초래하는 치아의 상실은 손쉬운 노력으로 거의 100% 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뽑게 되는 원인의 90% 이상이 치아우식증(충치)과 치주병(잇몸병)인데요, 이 병들은 발생해서 이를 뽑게 될 때까지 진행되는 기간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이르기 때문에 미리 미리 호미로 막아주면 가래로 막을 일이 거의 생기지 않는 병들입니다.(그림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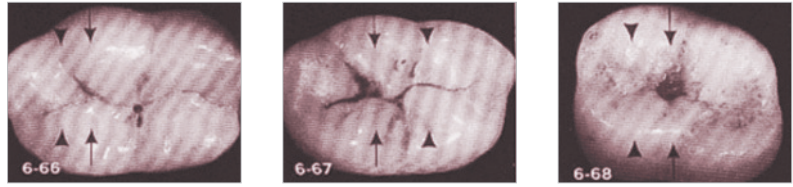


그림 1. 치아우식증의 발생과 진행(첫 번째 단계는 치료하지 않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치료가 필요하나 보험으로 할 경우 돈 만 원으로 해결가능한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부터는 보철이 필요하며, 이 시기까지 놓치면 이를 뽑고 보철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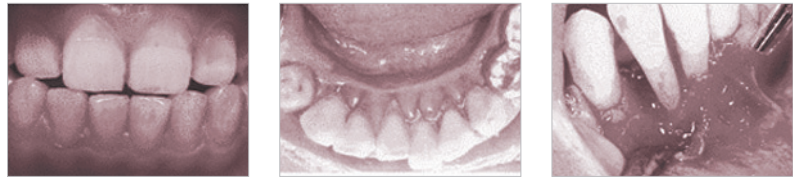


그림 2. 치주병의 발생과 진행(첫 번째 단계는 이만 잘 닦아도 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치면세마(스케일링)등의 간단한 치료로 해결가능한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부터는 치주수술을 하거나 이를 뽑고 보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미리 막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이를 뽑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병들의 경우, 이나 잇몸이 상당히 많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씹을 때 아프다든가 이가 흔들거려서 불편하다든가 하는 특별한 증상을 느껴서 치과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늦은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날라 온 헤어지자는 통보처럼 세상 일이 다 그렇기도 합니다. 서서히 축적되고 물밑에서 진행되다 한 순간 다가오는 일들, 세상에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진행되는 일들이 다반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대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건강이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듯이 우리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아직 아프다고 하지 않을 때, 그 때가 바로 이를 관리할 적기인 것이지요. 이는 대개 어릴 때는 6개월에서 1년,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1-2년에 한 번씩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면 평생 건강한 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치과에 가서 검사받을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법정 구강검진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영유아 시기 중 2, 4, 5세, 초등학교, 중·고 1학년생, 근로자(1-2년마다), 40세 이상 근로자의 부양가족(2년마다)의 경우에는 무료로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전국 10,000여 개의 치과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를 모르고 일반검진만 받고 구강검진은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전체 검진 항목 중 구강검진이 가장 중요한 항목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 영유아 중 10명에 1명도 받고 있지 않아 더욱 안타까움이 큼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아 건강 수준은 OECD 28개국 중 동유럽 4개국 다음으로 가장 나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치아건강 관련 삶의 질 수준도 캐나다의 두 배 이상 악화되어 있고, 가까운 홍콩보다도 열악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질 높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천이 바로 “안 아플 때 치과가기”입니다. **민국발명진흥원**



## 특허청 민원 크게 줄고 처리 빨라졌다!

민원신청 건수, 민원처리기간 및 만족도 모두 개선

특허청은 금년 상반기 동안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625건의 민원(고객의 소리)을 분석한 결과, 민원신청건수, 민원처리기간 및 민원만족도 등 모든 지표에서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 3월부터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는 민원신청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정부 부처 최초로 「One-Stop 민원 도우미 제도」를 시행한 성과로 해석된다.

특허청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담당 직원이 전화로 정확한 민원내용을 파악하고(엔젤콜), 답변을 제공한 후에도 전화를 걸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는(해피콜) 「One-Stop 민원 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민원신청건수는 6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8건(14.8%)이 감소하였다. 이는 그간 주요 불만사항이었던 전자출원의 이용 편리성이 개선된 효과라고 분석된다.

빨라진 민원처리기간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0.4일(12.9%)이 감소한 2.7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민원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허청은 3일 이내 처리를 하여 일반 민원 보다 2배 이상 빠른 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 만족도는 엔젤콜 및 해피콜 서비스의 운영으로 작년 하반기와 비교할 때 2.3점(3.6%)이 상승한 65.7점으로 나타나, 38개 중앙부처 평균 민원만족도(65.2점) 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번 조사결과에서 '심사·심판의 신속성을 기대·요구하는 민원'이 37건에 달하는 등 심사제도 및 심사절차를 잘 모르거나 출원과 동시에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개인출원인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시작하는 시기와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 등 출원인이 주로 궁금해 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 아울러 산업재산제도에 대한 손쉬운 이해를 돕는 안내책자를 만화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강원도, 16개 광역시도 중 상표권 최다 보유

100개 이상 상표권 보유한 기초단체도 11곳

16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록상표 포함) 중 가장 많은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상표제도 도입이후 2010년도 6월말 현재 지자체가 보유중인 상표권은 8,306건이고 이중 강원도가 1,186건으로 14.3%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지역은 수도권 주민에게 신선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농수산물 생산기반과 해수욕장 등 좋은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리적 장점과 아울러 상표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높은 인식에 따라 상표등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1,134건,13.6%)와 전라남도(1,018건 12.2%)가 뒤를 이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표 등록에 적극 나서 11개 기초단체가 100개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 특허출원 하루만 빨랐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상표·특허를 하루라도 먼저 신청한 사람이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렇다면, 같은 날짜에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 특허출원을 하였다면, 누가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일까?

특허청에 따르면, 같은 날짜에 유사한 상표·특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는 '04년 55건에서 '08년 97건으로, 특허는 '04년 246건에서 '08년 458건으로 약 2배 가깝게 증가했다. 특히, 특허권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후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만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사냥 전문국제기업(‘특허괴물’이라 칭함)인 A사, B사와 관련된 건이 '08년에는 전체의 약 25%(114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피해도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짜에 신청된 상표는 신청자 간의 협의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첨에 의해 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부여된다. 특허의 경우에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아무에게도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기술로 처리되므로, 몇 년간 연구한 기술이 권리도 받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허청 상표3심사팀 강호근 팀장은 “같은 날짜에 상표·특허 신청이 증가하는 현상은 기업경쟁의 심화, 특허괴물의 출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하루라도 빨리 권리화하려는 노력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권리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청에서 제공되는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디자인·특허 관리화 및 경영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였다.

## 복잡한 심결문, 표준화로 보기 편하고 알기 쉽게 !

### 특허심판원, 심결문의 표준화 시대를 열다

법원에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기재하는 ‘판결문’이 있다면, 특허심판원에는 ‘심결문’이 있다. 판결문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심결문도 심판관에 따라 그 형식과 용어에 차이가 있어 특허심판의 당사자들이 심결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은 여러 차례의 ‘심결문 독회’를 통해 표준화가 필요한 심결문의 형식 및 심판종류별 주문기재 요령과 통일화가 필요한 용어·문구를 정리하여 『심결문 표준화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특히 「심결문 표준화 매뉴얼」은 우수 심결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심판종류 및 심결유형별로 심결문의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결이유 중 대비판단 부분의 기재 요령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어 고품질 심결문 작성을 위한 필수 가이드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결문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특허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특허심판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분야 전담 심판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꿈을 키우는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

특허청, 전국 지역아동센터 등 40여 곳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 실시

특허청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발명체험을 통해 잠재된 창의성을 발휘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도록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을 운영한다.

금년도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복지단체가 추천한 전국의 아동시설과 도서·벽지 학교 등 4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은 발명교육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아동시설이나 도서·벽지 학교 학생들을 위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이며, 지난해 전국 27개 보육원 등을 찾아가던 데 이어 올해는 그 대상을 40여 곳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지난 6월 29일 전남 영광군 아름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된 첫 교육에서 학생들은 '태양빛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바람의 힘으로 빛을 내는 발전기' 등을 만들어 보면서, 평소 어렵게만 생각했던 발명을 재미있게 체험하고 발명가로서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아름이 지역아동센터 정은미 원장은 "교육프로그램이 재미있으면서 유익했고 학생들이 이렇게 집중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또한 구자성(홍농서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발명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꼭 다시 와주세요"라며 큰 호응을 보여 주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 대상기관에는 방문교육 이후에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발명에 대한 관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창의력증진 도서와 교구재가 제공되고 온라인 발명교육 콘텐츠도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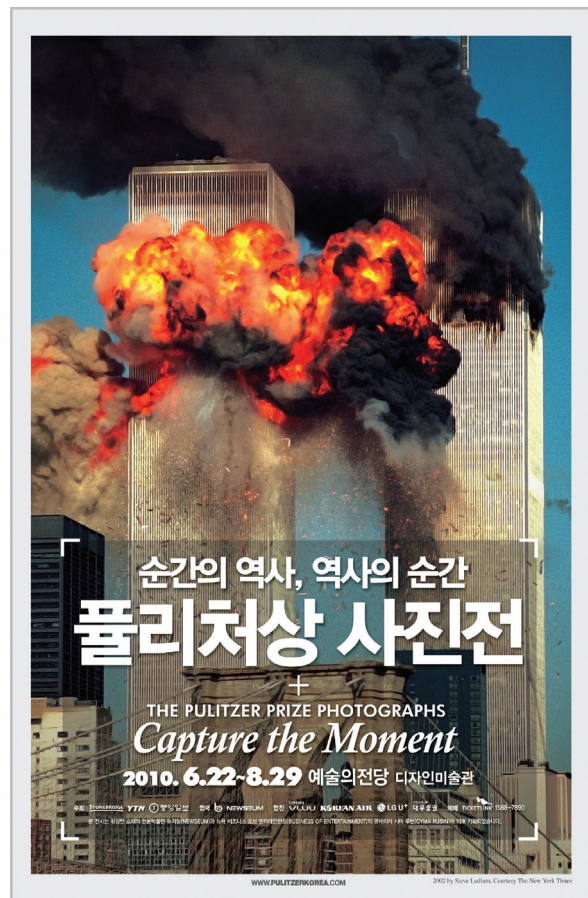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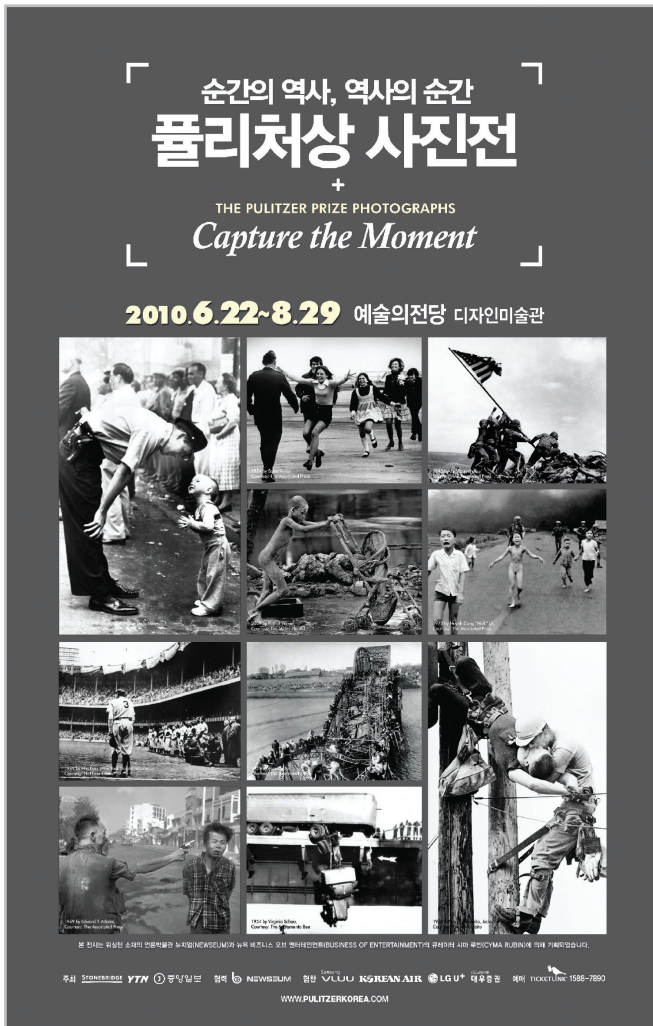
특허청은 앞으로 도서·벽지,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아울러 이들을 위한 발명캠프도 개최하여 발명교육을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제공 특허청

## 7월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회 원 명 : (주)엠비아이
- 대 표 자 : 유혁
- 업태/종목 : 제조 / 도매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00-5
- 전화번호 : 043-274-9701
- 홈페이지주소 : [www.mbigear.co.kr](http://www.mbigear.co.kr)





## 관람정보

- 전시일정  
2010년 6월 22일(화) ~ 8월 29일(일)
- 관람시간  
11:00~20:00(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 야간개장  
매주 목요일 11:00~22:00(입장마감 21시)



## 2010 지식재산 Summer School 성황리 개최

서울대 등 43개 대학 · 86명의 참가생과 8명의 조교로 운영



우리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9일까지 제주 보광 휘닉스아일랜드에서 『2010 이공계 대학생을 위한 지식재산 Summer School』을 개최, 지식재산 우수 대학생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서울대 등 43개 대학 · 86명의 참가생과 8명의 조교로 운영되었다. 특히 이번 참가자들은 2009 · 2010 지식재산 강좌 우수 수강생, 캠퍼스특허전략대회 및 대학발명경진대회 수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협 상근부회장은 수상학생들에게 상장 및 상금을 전달하고, “이번 8박 9일 동안의 심화교육 내용을 통해 반짝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특히에 강한 대학생 여러분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 태국왕실 방문, 우리회 특별상 전달

### 태국라자망갈라 대학과 업무협의를도

우리회 최종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7월 15일 태국왕실을 방문, 태국국립연구협의회(NRCT)의 요청에 따라 태국 Maha Chakri Sirindhorn 공주에게 우리회 특별상을 전달하였다.

또한, 최 부회장은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홍보 및 참가유치를 위해 태국라자망갈라대학(RMUTT)을 방문, Numyoot Songthanapitak 총장을 비롯, 부총장, 이사,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기술단과 대학별 수업현황 방문 및 격려, 대학 내 주요 특허기술을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 출품할 것 등을 협의하였다.

양 국은 국제전시회 관련으로 앞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 2010 IP 국제교육 'PADIAS' 개최

수강생 전원 Franklin Pierce Law Center Certificate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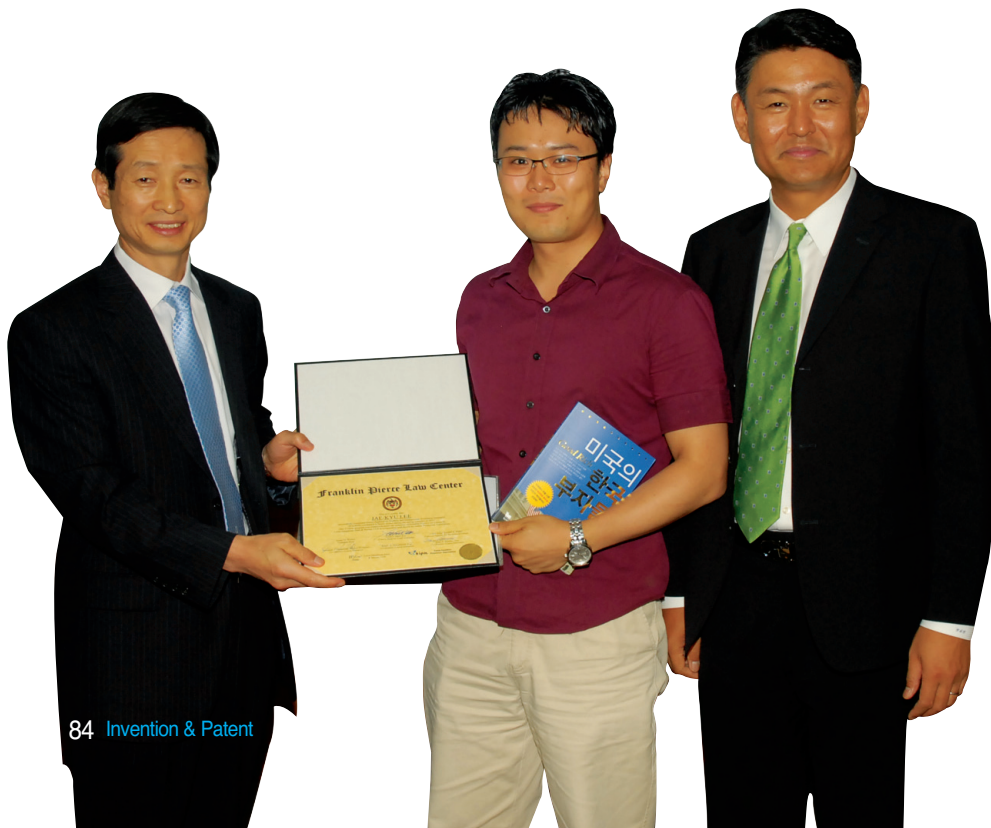
우리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11주간(59시간) '미국특허 출원서 작성 및 침해회피 전략(PADIAS : Patent Application Drafting and Infringement Avoidance Strategies)' 과정을 개최, 미국 IP 전문 로스쿨인 Franklin Pierce Law Center의 실무 과정을 제공하였다.

이번 과정은 LG전자, 삼성전기, 필룩스 등 국내 주요 기업에서 참여하여 수강생 전원이 수료하였으며, 미국 로스쿨 교수 및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들로 구성된 교수진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협 상근부회장은 "이번 과정이 기업의 해외연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전략적인 국제출원 및 관리를 담당할 IP 전문가를 육성,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일조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우리회는 2011년도 3월에 PADIAS 2기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PADIAS 관련 특집기사 다음 호에 계속



과정문의  
한국발명진흥회 교육기획팀  
T. 02-3459-2767, E. yongil@kipa.org



P u z z l 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 (남 · 여)

주소: .....

전화: ..... HP

□ □ □ - □ □ □

받는 사람

월간 **발명특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18F 발명진흥팀

1 3 5 - 9 8 0

월간  
발명특허  
저널  
가  
겨  
우  
퍼  
즐  
정  
답

월간 발명특허  
2010. 8

독자카드

• 이번호 내용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아쉬웠던 점은?

.....  
.....

• 앞으로 꼭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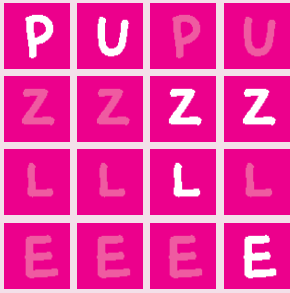
• 기타 「발명특허」에 하고 싶은 말씀은?

.....  
.....

8월호 퍼즐정답

1	2		4		5	
	3					
6					8	7
9	10			13		
			12			
11					15	
			14			





# 재미있는 퍼즐

재미있는 퍼즐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하며, 정답자 중 3명을 추첨하여 월간 <발명특허>지 1년 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 정답을 적어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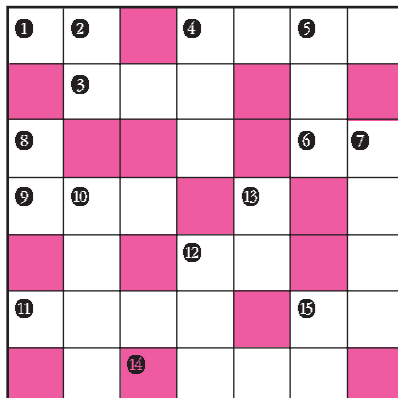
## 가로열쇠

1.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수 없는 운명.
3.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분모보다 큰 분수. 3/2, 7/5 따위이다.
4. 산과 바다에서 나는 온갖 진귀한 물건으로 차린, 맛이 좋은 음식.
6. 밀물이 가장 높은 해면까지 꼭 차게 들어오는 현상.
9. 배가 와서 닿는 곳. '나루터'로 순화.
11.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
12.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
14. 정치상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 또는 그런 집안.
15. 어질고 착한 아내.

## 세로열쇠

2.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이름이 난 사람. 또는 그런 집.
4. 동양화에서,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
5. 미국 하와이 주, 하와이 제도(諸島)의 오아후(Oahu) 섬에 있는 만. 일본의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곳으로 유명하다.
7.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으로,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어 온 아내를 이르는 말.
8. 산등성이를 따라 죽 이어진 선.
10. 젖소, 염소, 양 따위를 기르면서 젖을 짜서 파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12.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
13.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15. 양편의 집.

함께 풀어봅시다



7월호 정답

어	명		무	위	도	식
	화	성	법		미	
주			자		노	새
한	성	부		송		응
	형		아	첩		지
팔	도	강	산		병	마
	법		만	민	법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제한없음
- 모집시기: 수시
- 보내실곳(E-mail) : eldaah7@kipa.org

###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A4(1/2매, 글자크기: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eldaah7@kip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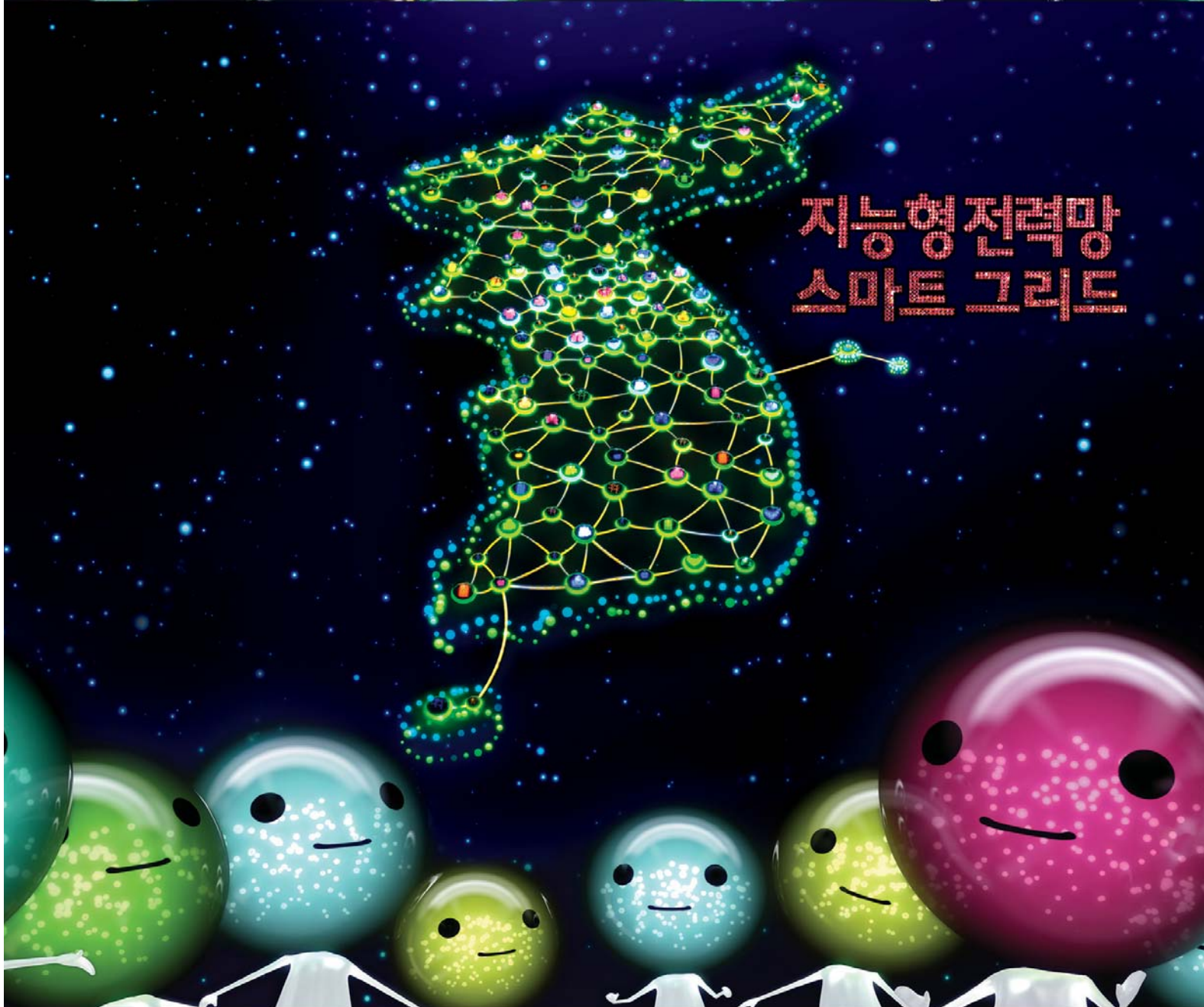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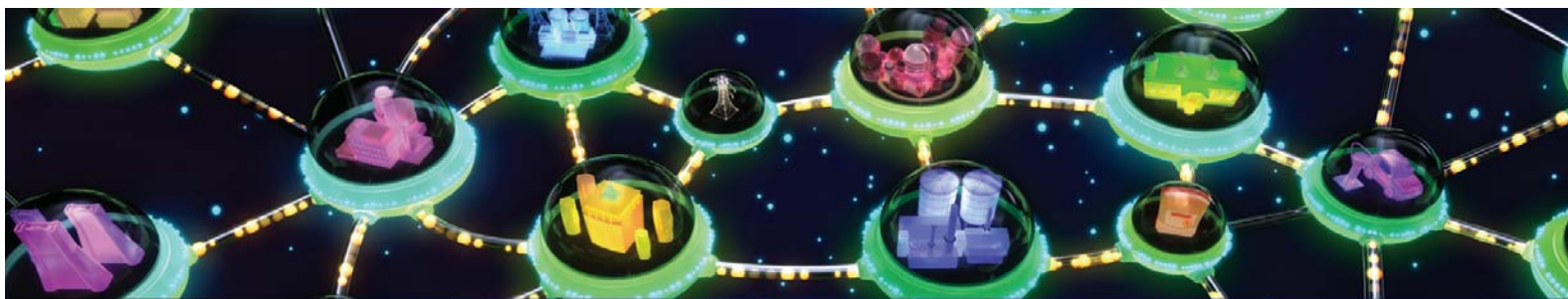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TEL (02)3459-2797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명훈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차명진	송상엽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편집 : 발명진흥팀 김민국 (Tel. 02-3459-2797, Fax. 02-3459-2799)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 차세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한국전력이 만들어 갑니다

전력망에 IT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기술과 노하우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에너지를 키워가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쉽게 사용하도록 하고,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 읽기도! 쓰기도! 삼성 e북 하나로 다된다

세상의 많은 책들이 이 한 권에!  
실제 노트에 필기하듯 자유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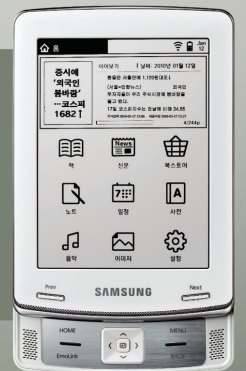
## 책보다 편한 책, 삼성 e북

SNE-60/60K

- 실제 종이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 전용펜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필기 가능 • WiFi로 PC연결 없이 콘텐츠 다운로드
- 다양한 포맷 및 파일 지원 (ePub, PDF, txt) • 전자사전 (영한, 한영, 영영) 기본 탑재 • MP3플레이어 기능

삼성 e북 콘텐츠 구매처  
교보문고, 텍스트어

"중이책과 e북 동시 출간 기념 작가와의 만남 이벤트" 교보문고의 삼성 e북 출간 기념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교보문고 홈페이지 참조 [www.kyobobook.co.kr](http://www.kyobobook.co.kr)) - 5월 김진명 작가



Samsung eBook

삼성전자 SAMSUNG